

비혼 가구 출산·육아지원 개선 방안 연구

김근진·송신영·김희수



연구보고 2025-03

비혼 가구 출산·육아지원 개선 방안 연구

저

자

김근진, 송신영, 김희수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 근 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송 신 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 희 수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5-03

비혼 가구 출산·육아지원 개선 방안 연구

발행일 2025년 9월
발행인 황옥경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사)한국장애인문화컨텐츠협회 02)2279-6760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115-9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통계청의 「2024년 출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비 2024년에 증가한 전체 출생아 8,300명 중 혼인 외 출생아는 3,000명으로 2023년 대비 2024년에 증가한 전체 출생아 수의 36%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혼인·출생 변화」 자료에 따르면, 1995년과 비교할 시 2024년 전체 출생아 수는 1/3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은 5배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도 점진적으로 OECD 다른 국가들과 같이 결혼과 출산이 분리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비혼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비혼 가구에 대해서는 통계 데이터의 미비 뿐 아니라 비혼 가구를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출생한 모든 아동과 가족이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출산 및 육아지원 관련 법체계는 혼인가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혼인 중심이 아닌 아동 중심으로 출산 및 육아지원 관련 법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법제도 현황 및 해외 사례를 소개할 뿐 아니라 비혼 가구의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다양한 주제 및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비혼 가구가 혼인 가구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5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 옥 경

요약	1
----	---

I. 서론	13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 내용	20
3. 연구 방법	21
4. 선행연구	22

II. 국내 법제도 현황	27
---------------	----

1. 모자보건법	29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3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5
4. 아동수당법	37
5.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40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4

III. 해외 사례	47
------------	----

1. 프랑스	50
2. 스웨덴	59
3. 네덜란드	64
4. 벨기에	67
5. 영국	70

IV. 관련 법안	77
-----------	----

1.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79
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81

V. 보조생식술의 허용범위 및 관련 쟁점	87
1. 보조생식술의 허용범위에 대한 관련 법령의 해석	89
2. 비혼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94
3. 보조생식술 출생자의 친자관계	95
4. 기증자 등록관리 및 보조생식술 출생자의 혈통을 알 권리	97
5. 보조생식술 출생자의 양육지원	98
6. 소결	104
 VI. 등록동반자 제도 도입 관련 쟁점	 107
1. 등록동반자 관계의 유형	109
2. 등록동반자 관계의 성립	110
3. 당사자 사이의 관계	111
4. 자녀와의 관계	112
5. 등록동반자 관계의 해소	113
6. 소결	115
 VII. 결론 및 제언	 119
1. 가족구성의 다양화 보장	121
2. 출산·육아지원 사각지대 보완	121
3. 등록동반자관계 규정 법체계 구성	123
4. 보조생식술 허용범위 확대 및 관련 쟁점 입법화	124
 참고문헌	 127



표 목차

〈표 Ⅰ-1-1〉 2023년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15
〈표 Ⅰ-1-2〉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에 대한 청소년의 찬성 응답률 변화 ..	15
〈표 Ⅰ-1-3〉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에 대한 2023년 청소년의 찬성 응답률	16
〈표 Ⅰ-1-4〉 통계청(2023)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16
〈표 Ⅰ-1-5〉 성별 미혼인구 비율(30~39세)(%)	17
〈표 Ⅰ-1-6〉 OECD 평균 비혼출산율(30개국 기준)	18
〈표 Ⅰ-1-7〉 한국의 비혼출산율(%)	18
〈표 Ⅰ-1-8〉 비친족가구 규모 변화	19
〈표 Ⅰ-3-1〉 자문회의 개최	21
〈표 Ⅰ-3-2〉 정책토론회(2025.9.25.)	22
〈표 Ⅱ-1-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30
〈표 Ⅱ-1-2〉 모자보건법	31
〈표 Ⅱ-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2
〈표 Ⅱ-1-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2
〈표 Ⅱ-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3
〈표 Ⅱ-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 배우자 출산휴가	34
〈표 Ⅱ-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4
〈표 Ⅱ-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5
〈표 Ⅱ-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6
〈표 Ⅱ-4-1〉 아동수당법	37
〈표 Ⅱ-4-2〉 아동수당 사업 지침	38
〈표 Ⅱ-5-1〉 영유아보육법	40
〈표 Ⅱ-5-2〉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41
〈표 Ⅱ-5-3〉 한부모가족지원법	41
〈표 Ⅱ-5-4〉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침	42
〈표 Ⅱ-5-5〉 유아교육법	42
〈표 Ⅱ-5-6〉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43
〈표 Ⅱ-5-7〉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추진 계획	43

〈표 II-6-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4
〈표 III-1-1〉 프랑스 시민연대계약(PACS)(민법 제515의1~제515의8조)	50
〈표 III-1-2〉 프랑스 생명윤리법(LOI n° 2021-1017 du 2 août 2021 relative à la bioéthique)	55
〈표 III-1-3〉 프랑스 노동법(Code du travail)	58
〈표 III-2-1〉 스웨덴 「유전적 통합성 등에 관한 법률」(Lag (2006:351) om genetisk integritet m.m.)	60
〈표 III-2-2〉 스웨덴 육아휴직법(Föräldraledighetslag (1995:584))	63
〈표 III-3-1〉 네덜란드 등록파트너십(민법 Titel 5A. Het geregistreerd partnerschap)	64
〈표 III-4-1〉 벨기에 법적 동거(Cohabitation légale) 벨기에 민법 제1475조~1479조	68
〈표 III-5-1〉 영국 「인간 수정 및 배아생성에 관한 법률」(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2008)	71
〈표 III-5-2〉 영국 공동 육아휴직 규정(The Shared Parental Leave Regulations 2014)	74
〈표 IV-1-1〉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용어 정의	79
〈표 IV-1-2〉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2023.4.26.)	80
〈표 IV-1-3〉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2023.5.31.)	80
〈표 IV-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어 정의	82
〈표 IV-2-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 정혜경,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2024.10.15.)	83
〈표 IV-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2023.5.31.)	83
〈표 IV-2-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2023.6.29.)	84
〈표 IV-2-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대표발의(2023.8.3.)	84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 의무라는 기존의 가치관은 크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임.
- 임희진, 황여정(2023)은 2023년 전국 초5~고3 청소년 7,718명 대상으로 가치관 변화를 조사하였는데, 결혼이 의무라는 응답은 30% 미만에 불과하나, 비혼동거가 가능하다는 응답은 80% 이상, 비혼출산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60% 이상에 달하였음.
- 같은 조사에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에 대한 청소년의 찬성 응답률(%) 변화를 보면 2012~2023년 사이 결혼이 의무라는 응답은 73.2%에서 29.5%로 44%p 감소하였음.
- 통계청(2023)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는 청년 연령은 「청년기본법」 연령 기준에 따라 19~34세(단위: %)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는데, 2012~2022년 사이 결혼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20%p 감소, 비혼동거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20%p 증가, 비혼출산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10%p 증가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청년 세대에서도 결혼과 출산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가치관이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비혼동거 및 비혼출산에 대한 수용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한국의 비혼출산율은 2024년 출생 통계 기준으로 5.8% 수준이지만, 2023년 대비 2024년 전체 출생아 수는 8,300명이 증가하였는데, 혼인 외 출생아 수는 3,000명이 증가하였음(통계청, 2025a: 10).
- 이러한 결과는 2023년 대비 2024년에 증가한 전체 출생아 수의 36%가 혼인 외 출생아라는 의미이며, 30년 전인 1995년과 비교하면 전체 출생아 수는 1/3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통계청, 2025b: 10),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은 5배로 증가하였음(통계청, 2025b: 19).

- ☐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 역시 점진적으로 결혼과 출산이 분리되는 제2차 인구변천으로 들어서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 청년 및 청소년 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고려할 시 향후 한국사회도 OECD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비혼동거 및 비혼출산의 증가가 예상되나, 현재 육아정책 관련 법체계는 혼인가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 이런 점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혼인 중심이 아닌 아동 중심으로 육아정책 관련 법체계 구성할 필요가 제기됨.
- ☐ 이를 위해서는 한국보다 수십년 먼저 가족구성의 다양화를 경험하고, 비혼동거 및 비혼출산의 비중이 높은 OECD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육아정책 분야에서 국제비교하여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초자료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 본 연구에서 비혼 가구는 **비혼동거**를 통해 이루어진 가구와 **비혼 단독 출산**을 통해 이루어진 가구를 모두 포함함.

나. 연구 내용

- ☐ 비혼 가구에 대한 육아정책 관련 법제도 현황
- ☐ 비혼 가구에 대한 육아정책 해외사례 분석
 - OECD 국가들의 가족구성 다양화 정책 현황 파악
 - OECD 국가들의 비혼 가구에 대한 육아정책 현황 국제비교
- ☐ 비혼 가구 관련 법안 분석
 -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비혼 가구 관련 법안 분석
- ☐ 비혼 가구 출산·육아지원 관련 법적 쟁점 분석
 - 보조생식술의 허용범위 및 관련 쟁점 분석
 - 등록동반자 제도 도입 관련 쟁점 분석
- ☐ 결론 및 제언
 - 국제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을 정리

- 가족구성 다양화에 대응하는 향후 육아정책 방향을 제시
- 비혼 가구 출산·육아 지원 개선을 위한 입법화 방향 제시

다. 연구 방법

□ 문헌분석

□ 사례조사

- OECD 국가들의 가족구성 다양화 정책 현황 파악
- OECD 국가들의 비혼 가구에 대한 육아정책 현황 파악

□ 전문가 자문회의

- 비혼 가구에 대한 육아정책의 입법화 방향 및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정책토론회 개최

- 비혼 가구에 대한 육아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정책 및 입법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라. 선행연구

□ 비혼동거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 가족에 대한 개념과 비혼동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김영란 외, 2021), 실제 비혼동거 중인 남녀는 여전히 한국사회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변수정, 엄다원, 안문희, 2023) 특히, 비혼 가구의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인식함(변수정 외, 2016).

□ 비혼 가구에 대한 제도적 불이익과 법과 제도의 한계

- 여성가족부가 2020년에 발표한 비혼동거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거 가구 중 자녀가 있는 비율은 6.4%에 불과하며, 이 중 52.3%가 출생신고 시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보육시설, 학교 등에서 가족관계를 증빙할 때, 의료기관에서 보호자를 필요로 할 때 각각 42.9%, 47.3%의 응답자가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음.

- 비혼모 및 비혼 가구의 생활과 관련 제도들에 관한 연구들은 비혼 가구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함에 있어 정부의 출산·육아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이 혼인과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 기반한 법과 제도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있음(송효진, 2019; 2021).
- 지역 단위에서 비혼 가정에 대한 구체적 정책 지원을 제안한 연구로는 정서린, 배문조(2025)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는 경북에 거주하는 2,30대 청년의 비혼동거와 비혼출산 등 비혼 가정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족, 차별 없는 권리, 함께 만드는 미래’의 비전 아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진과제 및 관련 세부 지원 사업을 지원 방안으로 제시하였음.

□ 비혼여성의 출산권과 보조생식술 접근성

- 비혼여성의 출산권과 관련해서는 보조생식술 접근성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을 불허하는 금지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윤리지침을 근거로 이들에 대해 보조생식술 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데에서 시작됨.
- 최인선과 유수정(2023)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정자 기증자와 출생아의 권리 보호’를 근거로 제3자의 생식능력을 이용해 보조생식술로 출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 역시 보조생식술로 출산하고자 하는 수증자의 조건을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관계’로 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날 출생아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혼인 여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2. 국내 법제도 현황

가.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는 난임을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가 아닌 동거관계나 비혼여성의 경우는 난임에서 제외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비혼자 보조생식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은 없기 때문에

비혼자의 보조생식술 시술은 금지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임.

- 그러나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서는 “체외수정시술 및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관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고 명시함에 따라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 접근이 제한되고 있음.
- 사실혼의 확인 방법은 각 사업마다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비혼동거 가구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해외사례에서 나타나는 등록동반자 제도 도입을 통해 법적 입증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등록동거제도 도입이 어려울 경우 각 사업의 사실혼 확인 방법을 신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됨.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에 관한 내용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으나, 사실혼 배우자는 공적인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에서는 특별공급 조건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7년 이내 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혼인기간을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신흰부부 특별공급은 법률혼에 한정하고 사실혼은 제외되고 있음.
- 청년 월세지원 등 일부 청년·신흰부부 주거지원 정책은 혼인에 사실혼을 포함하고 있으나 신흰부부 특별공급은 사실혼을 제외하고 법률혼에 한정하는데, 이러한 규정은 사실혼 기간의 입증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공적 증명서에 의해 입증될 수 없고, 사실혼존재확인 소송 등 별도의 복잡한 절차를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 제도를 실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함.

- 이런 점에서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에서 나타나는 등록동반자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라. 아동수당법

- 아동수당은 아동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보호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혼인 여부는 고려되지 않음.
- 그러나 미혼부 자녀의 경우에는 아동수당 수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 이와 같이 법령에는 비혼 가구에 대해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 신청 및 지급에서는 혼인 가구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마.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 「영유아보육법」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가족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아교육법」은 한부모 가족을 유치원 유아모집 우선순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 출생신고의무자 조항 및 친생자출생신고조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음.
- 출생신고는 교육·복지·의료 등 출산 및 육아 지원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기 때문에 비혼 가구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가족관계등록법상 해당 조항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임.

3. 해외 사례

- 프랑스 시민연대계약(PACS)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고, 성인이 ‘공동생활을 조직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규정된다는 점에서 혼인의사를 요구하는 사

실혼과 차이가 있고, 별도의 유언이 없을 경우 자동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인과 차이가 발생함.

- 프랑스 「생명윤리법」은 보조생식술 시술을 혼인 여부 및 개인·커플 여부에 따라 제한하지 않음.
- 스웨덴 「유전적 통합성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거커플 및 비혼여성에게도 보조생식술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 「생명윤리법」과 스웨덴 「유전적 통합성 등에 관한 법률」은 비혼여성도 보조생식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진 또는 다학제팀을 통한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날 아동의 친자관계, 아동의 혈통을 알 권리 및 아동의 양육조건 등에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네덜란드 등록파트너십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고, 별거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면 민법의 혼인관계 규정이 적용되어 등록동거제도 중 혼인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벨기에 법적 동거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고, ‘법적 동거 선언을 한 두 사람이 공동생활을 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법적 동거를 위해서는 ‘법적 동거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요구하고 있고, 프랑스의 PACS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유언이 없을 경우 자동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인과 차이가 발생함.
- 영국 「인간 수정 및 배아생성에 관한 법률」은 보조생식술에 의해 태어난 아이는 모의 혼인 또는 시민 파트너십 상대방이 보조생식술 시술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아이의 아버지로 간주된다고 명시함으로써 보조생식술로 태어난 아이의 친자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 노동법은 출산휴가 등의 권리를 아버지 뿐 아니라 어머니의 배우자, 동거인, PACS 상대 당사자에게도 인정하고 있음.
- 스웨덴 육아휴직법은 육아휴직의 권리에 있어서 부모의 동거인을 부모와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음.

4. 관련 법안

□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중 용혜인 의원안(2023.4.26.)과 장혜영 의원안(2023.5.31.)은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는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과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해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함.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혜영 의원안(2023.5.31.)은 용어의 정의에서 난임을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에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보조생식술 등 출산 지원과 그 밖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임신 지원사업으로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조생식술 시술 등 임신 유도 및 촉진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이수진 의원안(2023.6.29.)은 난임의 정의를 수정하고, 비혼시술임신의 정의를 추가하였는데, 여기서 ‘비혼시술임신’은 혼인하지 않은 성인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통한 임신을 말함.
- 강민정 의원안(2023.8.3.)은 용어의 정의에서 난임을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에 여성이 임신·출산의 여부, 방법 및 시기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보조생식술 시술 지원사업으로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을 위하여 보조생식술 시술을 필요로 하는 성인 여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이재강, 정혜경, 강경숙 의원안(2025.10.15.)은 난임의 정의에서 부부를 삭제하고 비혼임신시술의 정의를 추가하였는데, ‘비혼임신시술’은 혼인(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 있지 않은 성인 여성에 대하여 임신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보조생식술을 말함.

5. 보조생식술의 허용범위 및 관련 쟁점

- ☐ 보조생식술의 허용범위에 대한 관련 법령의 해석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 모자보건법
 -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 ☐ 비혼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 ☐ 보조생식술 출생자의 친자관계
- ☐ 기증자 등록관리 및 보조생식술 출생자의 혈통을 알 권리
- ☐ 보조생식술 출생자의 양육지원
 - 국내 사례
 - 해외 사례,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의 사례
- ☐ 소결

6. 등록동반자 제도 도입 관련 쟁점

- ☐ 등록동반자 관계의 유형
- ☐ 등록동거 관계의 성립
- ☐ 당사자 사이의 관계
- ☐ 자녀와의 관계
- ☐ 등록동반자 관계의 해소
- ☐ 소결

7. 결론 및 제언

- ☐ 기존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제2차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이론에서 제시되었듯이 결혼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가치관, 비혼동거 및 비혼

출산의 수용은 국제적 추세이며, 이러한 추세는 우리 사회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혼인 중심의 인구위기 대응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됨.

- 현대 사회는 자유시민들로 구성된 사회라는 점에서 인구위기 대응 정책 역시 가족 구성을 위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가족 구성의 다양화 수용이 법제도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국내 법제도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가족의 존중이 아직 법제도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책 수행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법률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행 법령 하에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책 지원에서 사업별 기준을 마련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음.
- 그럼에도 현재와 같이 등록동반자관계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비혼 가구에 대한 출산 및 육아 지원은 현행 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 건강지원, 자녀돌봄 시간지원, 주거지원 등 혼인 가구에게 이루어지는 출산 및 육아 지원이 비혼 가구에도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등록동반자관계에 대한 법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제도에서는 등록동반자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사실혼 관계로 다룰 수 밖에 없는데, 사실혼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관계이므로 공적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등록동반자관계에 법제도 도입을 통해 비혼 가구에 대한 공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제기됨.
- 이와 관련하여 등록동반자관계의 일상가사대리권, 부양의무 등은 인정되지만, 성립, 해소, 재산분할, 상속 등에서는 혼인과 다르게 구성하는 것이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판단됨.
- 「생명윤리법」 및 「모자보건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생식술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의해 비혼여성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비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현재와 같이 혼인 여성에게 보조생식술 시술을 한정하는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지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들이 발의되었는데 이 법률 안들은 모자보건법에서 난임 규정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혼인 관계 이외의 비 혼여성에게도 보조생식술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모자보건법」은 보조생식술 시술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법이 아닌 보조생식술 시술의 비용 등 지원을 위한 법률로 판단한다면 보조생식술 시술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법은 「모자보건법」이 아니라 「생명윤리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해외 사례에서도 보조생식술 시술의 근거는 「생명윤리법」 및 그에 해당하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 해외 사례에서는 「생명윤리법」에서 보조생식술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의료진 또는 다학제 팀이 신청자의 건강, 중독 여부,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조생식술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함.
-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가 단지 신청자의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비해 해외 사례는 훨씬 구체적으로 보조생식술 시술 여부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해외 사례의 「생명윤리법」에서는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아동의 친자관계, 생식세포 기증자 관리 및 아동의 혈통을 알 권리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해외 사례에서 이러한 법적 쟁점을 보조생식술의 허용 범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생명윤리법」 등 보조생식술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입법화 방향에서 이러한 법적 쟁점들에 대한 내용이 입법에 포함되어야 함.

I

서론

-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02 연구 내용
- 03 연구 방법
- 04 선행연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 의무라는 기존의 가치관은 크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임희진, 황여정(2023)은 2023년 전국 초5~고3 청소년 7,718명 대상으로 가치관 변화를 조사하였는데, 결혼이 의무라는 응답은 30% 미만에 불과하나, 비혼동거가 가능하다는 응답은 80% 이상, 비혼출산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60% 이상에 달하였다.

〈표 I-1-1〉 2023년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문항	찬성 응답(%)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29.5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81.3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19.8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60.6

자료: 임희진, 황여정(2023).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135, 140.

같은 조사에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에 대한 청소년의 찬성 응답률(%) 변화를 보면 2012~2023년 사이 결혼이 의무라는 응답은 73.2%에서 29.5%로 44%p 감소하였다.

〈표 I-1-2〉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에 대한 청소년의 찬성 응답률 변화

구분	2012	2023
전체	73.2	29.5
남성	82.3	39.5
여성	63.1	18.8

자료: 임희진, 황여정(2023).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137.

같은 조사에서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에 대한 2023년 청소년의 찬성 응답률(%):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은 20% 미만에 불과하였다.

〈표 I-1-3〉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에 대한 2023년 청소년의 찬성 응답률

전체	남성	여성
19.8	27.8	11.2

자료: 임희진, 황여정(2023).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140.

이러한 결과는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가치관이 청소년 세대에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비혼동거 및 비혼출산에 대한 수용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2023)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는 청년 연령은 「청년기본법」연령 기준에 따라 19~34세(단위: %)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는데, 2012~2022년 사이 결혼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20%p 감소, 비혼동거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20%p 증가, 비혼출산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10%p 증가하였다.

〈표 I-1-4〉 통계청(2023)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구분	2012	2022
결혼 ‘긍정적’	56.5	36.4
비혼동거 ‘동의함’	61.8	80.9
결혼 후 자녀 가질 필요 없음	46.4(2018년)	53.5
비혼출산 ‘동의함’	29.8	39.6

자료: 통계청(2023).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pp.1-3.

이러한 결과는 청년 세대에서도 결혼과 출산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가치관이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비혼동거 및 비혼출산에 대한 수용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2025)는 2024년 전국 19~34세 청년 15,098명이 응답하였는데, 결혼계획(미혼) 63.1%(남 67.8%, 여 57.5%), 자녀 출산의향(기혼 포함) 59.3%(남 65.1%, 여 52.8%)이었고, 2022년 결과는 결혼계획(미혼) 75.3%(남 79.8%, 여 69.7%), 자녀 출산의향(기혼 포함) 63.3%(남 70.5%, 여 55.3%)으로 나타났는데, 2022년 결과와 비교하면 2024년 결과는 결혼계획(미혼) 약12% 감소, 자녀 출산의향(기혼 포함) 약 4% 감소하였으므로 알 수 있다.

선진국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인 제2차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이론에서는 현대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의 특성 (Lesthaeghe, 2014)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① 지속적인 저출산(sustained subreplacement fertility)
 - 저출산(subreplacement fertility)은 대체출산율(replacement fertility: 합계출산율 2.1) 미만의 출산율을 의미
 - 2022년 현재 OECD 38개국 중 대체출산율 이상의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는 이스라엘 뿐임.
- ② 결혼 이외 생활 양식의 다양화(a multitude of living arrangements other than marriage): 비혼동거(nonmarital cohabitation)의 증가
- ③ 결혼과 출산의 분리(a disconnection between marriage and procreation): 비혼출산(births outside marriage)의 증가
- ④ 고정적이지 않은 인구 변동(no stationary population): 지속적인 저출산(subreaplcement fertility)으로 인한 인구감소

제2차 인구변천 이론에 따르면 지속적인 저출산 및 결혼과 출산이 분리되는 추세는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가구 기본 항목의 성별 미혼인구 비율(30~39세)(%)을 보면 2000년과 비교하여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I-1-5〉 성별 미혼인구 비율(30~39세)(%)

구분	남성	여성	전체
1990	9.5	4.1	6.8
2000	19.2	7.5	13.4
2010	37.9	20.4	29.2
2020	50.8	33.6	42.5

자료: 통계청(2021).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가구 기본 항목. p.5.

이 결과를 보면 30~39세 미혼인구 비율은 2000년 13.4%에서 2020년 42.5%로 3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을 보면 한국 4.7, OECD 평균 4.6으로 나타나, 한국의 조혼인율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OECD family

database), 만혼과 비혼은 한국 뿐 아니라 OECD 전체 국가들에서 보편적인 현상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한국 0.81, OECD 평균 1.58로(OECD family database),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 차이는 다른 OECD 국가들은 결혼과 출산이 분리되어 있으나, 한국은 결혼을 통한 출산만이 사회적으로 용인된다는 점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OECD 평균 비혼출산율(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을 보면 OECD 30개국 기준(%)으로 2020년 40.2%에 달하고 있고, OECD 37개국 기준으로는 2020년 41.9%에 달하고 있다(OECD family database).

〈표 I-1-6〉 OECD 평균 비혼출산율(30개국 기준)

1970	1995	2020
7.3	23.2	40.2

자료: OECD family database.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oecd-family-database.html>. (인출일: 2025.6.24.)

이에 비해 한국의 비혼출산율은 「2024년 출생 통계」 기준으로 5.8% 수준이다(통계청, 2025a: 10). 2023년 대비 2024년 전체 출생아 수는 8,300명이 증가하였는데, 혼인 외 출생아 수는 3,000명이 증가하였다(통계청, 2025a: 10). 이러한 결과는 2023년 대비 2024년에 증가한 전체 출생아 수의 36%가 혼인 외 출생아라는 의미이다. 30년 전인 1995년과 비교하면 전체 출생아 수는 1/3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통계청, 2025b: 10),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은 5배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25b: 19).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 역시 점진적으로 결혼과 출산이 분리되는 제2차 인구변천으로 들어서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I-1-7〉 한국의 비혼출산율(%)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2	2.3	2.5	2.9	3.9	4.7	5.8

자료: 통계청(2025a). 2024년 출생통계. p.10.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총조사에서 ‘가구주의 성·연령 및 세대구성별 가구

(일반가구) 중 비친족가구'를 보면, 비혼동거를 포함하는 비친족가구는 2015년 대비 2022년 2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I-1-8〉 비친족가구 규모 변화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가구수	214,421	269,444	308,659	340,567	386,968	423,459	472,660	513,889
인구수	471,859	583,438	673,784	746,930	840,936	912,878	1,015,100	1,098,224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총조사: 가구의 성·연령 및 세대구성별 가구(일반가구) 중 비친족가구.
<https://kosis.kr/index/index.do>. (인출일: 2025.6.24.)

청년 및 청소년 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고려할 시 향후 한국사회도 OECD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비혼동거 및 비혼출산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육아정책 관련 법체계는 혼인가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에서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에 한정되어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한정되어 있다.

육아휴직은 동거 커플일 경우 아버지는 육아휴직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에서 난임은 부부에 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의 피부양자는 배우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에는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기반 마련(혼인·혈연 중심의 가족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생활·돌봄공동체 관련 법제 마련)이 포함되어 있으나 관련 정책은 진전이 이루어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혼인 중심이 아닌 아동 중심으로 육아정책 관련 법체계 구성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보다 수십년 먼저 가족구성도의 다양화를 경험하고, 비혼동거의 비중이 높은 OECD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육아정책 분야에서 국제비교하여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초자료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비혼 가구는 비혼동거를 통해 이루어진 가구와 비혼 단독출산을 통해 이루어진 가구를 모두 포함한다.

비혼동거 가구와 비혼 단독출산 가구는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차이가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 제6장 「등록동반자 제도 도입 관련 쟁점」은 비혼동거 가구에 관한 주제이고, 제5장 「보조생식술의 허용범위 및 관련 쟁점」은 비혼 단독 출산 가구에 관한 주제로 구분된다.

2. 연구 내용

- 비혼 가구에 대한 육아정책 관련 법제도 현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육아정책 관련 법제도 분석
 - 비혼 가구에 대한 육아정책 적용 현황 파악
- 비혼 가구에 대한 육아정책 해외사례 분석
 - OECD 국가들의 가족구성 다양화 정책 현황 파악
 - OECD 국가들의 비혼 가구에 대한 육아정책 현황 국제비교
- 비혼 가구 관련 법안 분석
 -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비혼 가구 관련 법안 분석
- 비혼 가구 출산·육아지원 관련 제도적 쟁점 분석
 - 보조생식술의 허용범위 및 관련 쟁점 분석
 - 등록동반자 제도 도입 관련 쟁점 분석
- 결론 및 제언
 - 국제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을 정리
 - 가족구성 다양화에 대응하는 향후 육아정책 방향을 제시
 - 비혼 가구 출산·육아 지원 개선을 위한 입법화 방향 제시

3. 연구 방법

○ 문헌분석

- 가족구성 다양화 관련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 가족구성 관련 법제도 및 입법 동향 분석
- 비혼 가구에 대한 육아정책 관련 법제도 분석

○ 사례조사

- OECD 국가들의 가족구성 다양화 정책 현황 파악
- OECD 국가들의 비혼 가구에 대한 육아정책 현황 파악

○ 전문가 자문회의

- 비혼 가구에 대한 육아정책의 OECD 각국 현황 및 의견, 정책 시사점을 청취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표 I-3-1〉 자문회의 개최

구분	일시	참석자	내용
1차	2025. 6. 9.	000 연구위원(000연구위원) 000 선임연구위원(000연구위원)	비혼출산의 제도적 현황 및 개선 과제 파악
2차	2025. 7. 28.	000 조사관(000처)	해외 사례 검토 및 입법 방향 논의
3차	2025. 8. 1.	000 연구위원(000연구위원)	지자체 비혼 가정 정책 지원 사례 논의
4차	2025. 8. 4.	000 전 의원(00대 국회의원)	향후 입법 방향, 기존 법안 발의의 시사점, 입법 시 고려해야 할 지점 등 논의

○ 정책토론회 개최

- 비혼 가구에 대한 육아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정책 및 입법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5.9.25.)

〈표 I -3-2〉 정책토론회(2025.9.25.)

구분	내용
발표	• 비혼 가구 출산·육아지원 개선 방안 /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지정토론	• 좌 장: 이윤진 (건국대학교 건강고령사회연구원 교수) • 토론자: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손윤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부연구위원) - 유수정 (동아대학교 인문사회학연구소 교수)

4. 선행연구

가. 비혼동거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가족에 대한 개념과 비혼동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김영란 외, 2021), 실제 비혼동거 중인 남녀는 여전히 한국사회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변수정, 엄다원, 안문희, 2023) 특히, 비혼 가구의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인식한다(변수정 외, 2016). 비혼동거에 대한 찬성하는 비율은 비혼 동거자에서도 자녀의 필요성이나 출산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신과 출산에 이르는 비율은 매우 낮다. 동거를 결혼의 전 단계로 인식하는 경우에서 결혼의 대안으로 보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출산 의향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변수정 외, 2016)로 볼 때, 동거 가구의 출산은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2023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비혼 동거에 대한 기대에 관한 질문에서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치는 4점 만점 중 2.57점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대한 기대치보다 점수가 낮았다. 더욱이 혼인신고 계획 유무에 따라 혼인신고 계획이 없는 집단의 경우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기대는 1.64점에 불과하여 유사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비혼 가구에 대한 제도적 불이익과 법과 제도의 한계

실제 동거 가구는 자녀 출산과 양육의 과정에서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더불어 주거·복지·보육 지원 접근성 등과 관련하여 법과 제도상의 불이익을 경험한다. 여

성가족부가 2020년에 발표한 비혼동거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거 가구 중 자녀가 있는 비율은 6.4%에 불과하며, 이 중 52.3%가 출생신고 시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보육시설, 학교 등에서 가족관계를 증빙할 때, 의료기관에서 보호자를 필요로 할 때 각각 42.9%, 47.3%의 응답자가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한 세금 납부 시 인적공제나 교육비 등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과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62.4%, 53.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김영란 외, 2021: 58-59) 비혼 가구가 제도적 차별과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혼모 및 비혼 가구의 생활과 관련 제도들에 관한 연구들은 비혼 가구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함에 있어 정부의 출산·육아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이 혼인과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 기반한 법과 제도에서 출발한다고 본다(송효진, 2019; 2021). ‘가족’을 혼인과 혈연을 전제로 보는 것은 단순 정의의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제도와 연관되어 비혼 가구의 출산과 육아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야기하며, 각종 지원 제도 대상에서 배제시킨다고 본다.

송효진(2019)은 우리나라의 비혼모에 대한 법제도와 운영이 가부장제 및 (혼인과 혈연관계에 의한) 정상가족 중심의 관점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비혼모와 그들의 자녀가 법 제도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되거나 배제되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이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로 구분하며 출생신고부터 법적 지위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으며, 비혼모의 친권을 제한하고 출생신고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로 신고가 지연되고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또한 송효진(2021)은 가족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법제 대응 마련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며, 가족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확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민법에서 가족 범위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혼 이외의 대안적 관계를 인정하고 이상적인 가족상을 두고 이에 벗어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족의 정상성을 회복한다는 관점의 건강가정기본법을 있는 그대로의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법의 제명을 달리하고 가족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가족다양성을 반영한 정책지원 근거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생활동반자법’ 등의 제도와 논의의 시관계의 다양성과 당사자 선택권 존중과 법률혼 중심의 협소한 가족 규정에서 벗어

나 포괄적 법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지역 단위에서 비혼 가정에 대한 구체적 정책 지원을 제안한 연구로는 정서린, 배문조(2025)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경북에 거주하는 2,30대 청년의 비혼 동거와 비혼출산 등 비혼 가정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족, 차별없는 권리, 함께 만드는 미래’의 비전 아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진과제 및 관련 세부 지원 사업을 지원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중 출산과 양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동반가족등록제’ 연구를 통한 도입, 가족다양성 보호에 대한 조례 제정, 비혼 부모의 단독 신고를 허용하여 출생신고권 확대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법률혼에 기반한 정상가족 중심의 행정체계를 정비하여 제도적 포용성과 행정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 비혼여성의 출산권과 보조생식술 접근성

비혼 동거와 같이 혼인신고를 선택하지 않은 파트너가 있는 관계에서의 자녀 출산 및 양육 문제에서 나아가, 비혼을 선택한 여성이 홀로 자녀를 갖고자 하는 비혼 여성의 출산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혼여성의 출산권과 관련해서는 보조생식술 접근성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을 불허하는 금지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윤리지침을 근거로 이들에 대해 보조생식술 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데에서 시작된다. 이로 인해 임신을 원하지만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들은 임신 단계에서부터 차단된다. 이에 대해 윤석찬(2023)은 법적 금지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학회에서의 윤리강령이 비혼여성의 임신을 제한하여 출산에 관한 자기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준일(2022) 역시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여성 고유의 헌법적 권리로,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한 차별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난임 부부에게만 한정하여 제공되는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 역시 비혼여성의 평등권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은애(2009)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재생산권리가 헌법적 인정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실질적 보장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보조생식술을 통한 출산권 보장이 필수적임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최인선과 유

수정(2023)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정자 기증자와 출생아의 권리 보호’를 근거로 제3자의 생식능력을 이용해 보조생식술로 출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 역시 보조생식술로 출산하고자 하는 수증자의 조건을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관계’로 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날 출생아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혼인 여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II

국내 법제도 현황

- 01 모자보건법
- 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0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04 아동수당법
- 05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 0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II. 국내 법제도 현황

1.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는 난임을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가 아닌 동거관계나 비혼여성의 경우는 난임에서 제외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혼자 보조생식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은 없기 때문에 비혼자의 보조생식술 시술은 금지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서는 “체외수정시술 및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관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생명윤리법 제24조에 따라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고, 동법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만 명시되어 있다.

대법원에서는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0.1.30. 선고 2000도4942 판결).

이에 따라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의사 및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동거의사 및 동거관계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실혼은 해외 사례에서 나타나는 등록동반자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5a: 128).

이에 의하면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 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5a: 128).

사실혼 확인보증서는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 2025a: 128).

〈표 II-1-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구분	내용
지원신청 자격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1)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2)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 주민등록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야 함 3)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4)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입출국이 반복된 경우 국내 체류기간 모두 합산하여 산정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2025a).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128.

〈표 II-1-2〉 모자보건법

구분	내용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22., 2019. 4. 23.> 11. “난임(難妊)”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학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신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신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도우미의 신청 방법·절차, 지원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대한 확인 방법으로 담당자의 직접 확인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혼인의사존재 확인과 부부 공동생활 확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5b: 31).

- 혼인의사 존재 확인은 사실상의 ‘혼인관계확인서’(서식32)에 의하고, 확인자(2인)의 범위는 양가 부모, 조부모, 4촌이내의 친족, 통(리)장, 주민 중 2명으로 한정한다.
- 부부 공동생활 확인은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담당자의 사실조사서(본인 진술서 및 인우확인서 등 첨부)에 의한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사실혼의 확인 방법은 각 사업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혼동거 가구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해외사례에서 나타나는 등록동반자

제도 도입을 통해 법적 입증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등록동거제도 도입이 어려울 경우 각 사업의 사실혼 확인 방법을 신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표 II-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구분	내용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⑦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⑪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자료: 보건복지부(2025b).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p.31.

〈표 II-1-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구분	내용
미혼모 산모 자격 판정 방법 (미혼모 입소사실 확인서 등으로 확인불가 시)	1. 정의 : 미혼모란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 미혼 한부모가족은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에 해당 -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상 혼인기록이 있는 자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있으므로 미혼 한부모로 보지 않음 2. 확인방법 : 미혼 여부 등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공적자료를 통해 법률상 혼인관계 및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확인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종합적으로 판단 - 사실혼 등이 사후에 밝혀지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함을 안내 - 사실혼 등의 부정수급 신고가 있는 경우, 기존 사실혼 등의 사유를 주장한 적이 있거나,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제공인력을 통해 사실혼 혹은 배우자의 동거 등 미혼모가 아님이 의심되는 경우, 시군구는 사실 확인 후 조치 (부정수급 절차, 수사외뢰 등)
사실혼 관계에 대한 확인 방법	가. 공적자료에 의한 확인 - 법원의 판결 등 타 공적기관의 사실혼 판단이 있는 경우 판결문 등 타 공적기관의 자료에 따라 사실혼 관계 인정여부 결정 나. 담당자의 직접 확인 - 혼인의사존재 확인 : 사실상의 '혼인관계확인서'(서식32)에 의함

구분	내용
	* 확인자(2인)의 범위 : 양가 부모, 조부모, 4촌이내의 친족, 통(리)장, 주민 중 2명 - 부부 공동생활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담당자의 사실조사서(본인 진술서 및 인우확인서 등 첨부)

자료: 보건복지부(2025b).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p.36.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이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표 II-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구분	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 업무편람(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5: 175).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서 규정한 가족 역시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사실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 이러한 규정은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에 관한 내용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혼 배우자는 공적인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 배우자 출산휴가

구분	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표 II-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구분	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

구분	내용
	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표 II-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구분	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에서는 특별공급 조건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7년 이내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혼인기간을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법률혼에 한정하고 사실혼은 제외되고 있다.

청년 월세지원 등 일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은 혼인에 사실혼을 포함하고 있으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사실혼을 제외하고 법률혼에 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사실혼 기간의 입증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공적 증명서에 의해 입증될 수 없고, 사실혼존재확인소송 등 별도의 복잡한 절차를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 제도를 실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에서 나타나는 등록동거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표 II-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구분	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건설량의 23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춘 사람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라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공급요건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7년 이내일 것 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을 것 2. 공급순위 가.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1호가목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

구분	내용
	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u>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u>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4. 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제2조(정의)에서 “아동소당 수급권자”는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을 말하고(제2호),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제4호).

이와 같이 아동수당은 아동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보호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혼인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표 II-4-1〉 아동수당법

구분	내용
아동수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아동수당 수급권자”란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을 말한다. 3. “수급아동”이란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그러나 미혼부 자녀의 경우에는 아동수당 수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출생신고 이전에는 미혼부(자녀의 생부로서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생모와의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유전자 검사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고, 현행법상 미혼부는 친자관계 확인을 받기 위해 법원의 유전자 검사 명령이 필요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받기까지 최소 2~4주가 소요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3.2.6.).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이후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

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3.2.6.).

이외에도 생모가 혼인 외 출산 등의 사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하여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지연되어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생증명 서류(의사, 조산사 작성 출생증명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이가 작성한 출생사실증명서 등) 또는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3.2.6.).

또한 아동수당을 제때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존에는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를 진행하거나 천재지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였으나, 2023년 이후에는 재난 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 치료(조산 포함)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을 제외하고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필요)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3.2.6.).

이러한 제도 개선은 아동수당 사업 지침인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사업안내」에 다음 표와 같이 반영되어 있다.

〈표 II-4-2〉 아동수당 사업 지침

구분	내용
미혼부 자녀인 경우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미혼부는 생부의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생모와의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유전자검사결과 전이라도 ‘친생자 확인,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신청서(청구서), 법원접수증명원(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장(訴狀)사본 또는 청구서 사본’ 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절차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현장조사)을 거쳐 미혼부를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추정 * 필요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결정 등 조치 가능 - 추후 정기적으로 유전자검사결과 및 법원신청 결과를 확인(접수증명원상 사건번호, 당사자 등 이용 조회)하고 분기별 양육상황 점검 - 미혼부 보호자는 유전자검사결과, 법원 절차 완료, 타지역 전출입 등 변동사항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신고)해야 함 - 아동에게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되,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완료 또는 타지역 전입·전출여부를 확인*하여, 기 부여된 전산관리번호 자격 상실처리 또는 전산관리번호 관리행정동 변경 조치(중복지급 방지)
생모가 출산한	생모가 출산한 출생미신고 자녀로서 법률상 배우자 자녀로 추정되는 사유 등으로

구분	내용
출생미신고 자녀(아동이 미혼부와 실거주를 하여도 생모가 확인되고 함께 양육하는 경우 포함)	출생미신고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아동이 미혼부와 실거주를 하여도 생모가 확인되고 함께 양육하는 경우 포함) - 생모는 해당 자녀에 대하여 출생증명서류(의사,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의 출생사실 증명 서면**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한 출생확인신청서 사본***, 접수증명원), 친생자 확인을 위한 소송·청구 관련 서류(필요시) 등을 첨부하여 아동수당 신청 * 모의 진료기록 사본이나 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모의 임신사실 및 자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 통일부 장관이 발행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외국 관공서 등에서 행한 출생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 추후 법원 출생확인서 등본 제출 - 현장조사를 거쳐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아동수당 보장결정, 이후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결과 확인, 분기별 양육상황 점검 등 실시
신청 기간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소급 지급 기간산정 특례 : 다음의 경우, 60일 기간산정 시 제외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해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제847조),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4조의2), 인지의 허가 청구(제855조의2), 인지 청구의 소(제863조) 등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 유전자 검사기간,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포함)를 거친 경우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포함 -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입원·격리, 출산 후 산모의 입원치료, 조산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자가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제12조)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
지급 시기 및 방법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소급 지급 기간산정 특례 : 다음의 경우, 60일 기간산정 시 제외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해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제847조),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4조의2), 인지의 허가 청구(제855조의2), 인지청구의 소(제863조) 등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 유전자 검사기간,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포함)를 거친 경우*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 -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입원·격리, 출산 후 산모의 입원치료, 조산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자가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제12조)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

자료: 보건복지부(2025c). 2025 아동수당 사업안내. p.12, 23, 49, 97.

이와 같이 법령에는 비혼 가구에 대해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 신청 및 지급에서는 혼인 가구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서린, 배문조(2025)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혼 가구가 존재하고 있으나, 행정체계 내에서는 여전히 정상가족(혼인 가구) 중심의 기준이 고정되어 있어 비혼 가구는 제도적 지원의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실무자들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정서린, 배문조, 2025: 173).

5.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보육을 우선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II-5-1〉 영유아보육법

구분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2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4(보육의 우선 제공)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말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이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 순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는 1순위로 규정되어 있다(교육부, 2025: 68, 71).

〈표 II-5-2〉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구분	내용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 2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자료: 교육부(2025). 2025년 보육사업안내. p.68, 7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라목은 “모” 또는 “부”는 미혼자를 포함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II-5-3〉 한부모가족지원법

구분	내용
한부모가족지원 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u>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u>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 법 제5조(지원 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침인 「한부모지원사업 안내」에서는 미혼자의 경우 자녀의 비양육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5: 41).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혼의 기준은 대법원에서는 단순히 동거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혼인 의사 및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정부의 각 사업에 따라 각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서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혼이라고 보아 지원 대상에

서 제외하고 있다.

〈표 II-5-4〉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침

구분	내용
한부모가족지원 법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이혼 후 전 배우자(미혼자의 경우 자녀의 비양육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을 경 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혼 후 전배우자(미혼자의 경우 자녀의 비양육부모) 명의의 주택(전·월세계약 포 함)에 거주하는 경우도 동일. 단, 특별한 사유(예 : 전배우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 한 이혼, 주거 안정문제로 시일을 정해 거주 이전 예정인 경우, 위자료 문제 등)가 있는 경우 지자체 담당자의 사실조사를 통해 지원결정이 가능하나, 해당 주택가액 (혹은 보증금)을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산정함

자료: 여성가족부(2025).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41.

「유아교육법」 제11조(입학)제3항은 시·도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이 한부모가족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로 규정한 바와 달리, 「유아교육법」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시·도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5-5〉 유아교육법

구분	내용
유아교육법 제 11조(입학)	①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로 한다. ② 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모집·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시·도의 조례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를 예로 들면, 교육감은 매년 유아모집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제5조제1항)고 규정하고, 제5조제2항은 선발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다.

〈표 II-5-6〉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구분	내용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제5조 (모집·선발계획)	① 교육감은 매년 유아모집·선발계획(이하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및 인원 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3.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4.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모집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유아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추진 계획」에서는 우선모집 순위를 (1순위) 법정저소득층 가정,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3순위) 북한 이탈주민 가정, (4순위 이하) 기타로 제시하여, 한부모 가족이 별도의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표 II-5-7〉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추진 계획

구분	내용
우선모집	(우선모집 범위) 입학 희망 유치원에 확인 (1순위) 법정저소득층 가정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3순위) 북한이탈주민 가정 (4순위 이하) 기타 : 다자녀(2인 이상), 쌍생아, 본원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부모(장애형제·자매) 가정, 건강 취약 유아 등 ※ (보호자) 유치원 여건에 따라 유치원별 우선모집 범위(종류)가 다르므로 입학 지원 전 반드시 확인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2025.10.). 2026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추진 계획. p.6.

여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의 미취학 자녀의 돌봄에 있어 주로 이용하는 돌봄 방법(1순위)은 어린이집이 68.9%, 유치원 18.2%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비율이 87.1%로 나타났다(배호중 외, 2024: 71).

육아정책연구소 「2024 영유아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4년 0-5세 전체의 유치

원어린이집 이용률은 74.9%, 어린이집 이용률은 48.9%, 유치원 이용률은 26.0%로 나타났다(육아정책연구소, 2025: 27).

2024년 한부모 가족의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과 비교하면 한부모 가족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더 높고, 유치원 이용률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보육법에 한부모 가족을 우선순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아교육법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2023년 청년(20~39세) 한부모 가구의 등록취업(4대 보험 등 공공기관에 신고된 행정자료로 파악된 임금 및 비임금 근로 취업을 의미함) 비율은 65%로 양부모 가구(86.9%)보다 21.9%p가 낮게 나타났다(통계청, 2025c: 10). 또한 2023년 청년(20~39세) 한부모 가구의 상시임금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주의 연간 중위소득은 2,733만원으로 양부모 가구(5,197만원)보다 2,464만원 낮게 나타났다(통계청, 2025c: 15).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 가구가 양부모 가구보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부모 부담금이 낮은 어린이집 이용률이 유치원 이용률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다.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의무자는 모로 한정하고 부를 제외하였다.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는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의 신고 이외에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표 II-6-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구분	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구분	내용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헌법불합치, 2021헌마975, 2023.3.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46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2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5.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헌법불합치, 2021헌마975, 2023.3.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46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2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5.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전원재판부 2021헌마975, 2023.3.23.] 결정에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기본권이며,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출생신고의무자조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친생자출생신고조항)이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하였고, 또한 생부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며,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요지에서 ‘신고기간 내에 모나 그 남편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생부가 재래적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출산을 담당한 의료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모와 자녀에 관한 정

보 등을 포함한 출생신고의 기재사항을 미리 수집하고, 그 정보를 출생신고를 담당하는 기관에 송부하여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민법상 신분관계와 모순되는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출생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를 모에게 한정된 조항 및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인지의 효력이 있음) 이외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5.5.41을 시한으로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나 아직까지 해당 조항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

정서린, 배문조(2025)는 출생 신고는 아동의 법적 신분을 확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절차이자 이후 복지·의료·교육 지원을 받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므로,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비혼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 보장을 실현할 수 있고, 실질적인 가족 관계를 법률 및 행정 체계가 수용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정서린, 배문조, 2025: 173).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의 해당 조항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III

해외 사례

- 01 프랑스
- 02 스웨덴
- 03 네덜란드
- 04 벨기에
- 05 영국

III. 해외 사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 시민연대계약(PACS)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고, 성인이 ‘공동생활을 조직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규정된다는 점에서 혼인의사를 요구하는 사실혼과 차이가 있다. 별도의 유언이 없을 경우 자동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인과 차이가 발생한다.

프랑스 「생명윤리법」은 보조생식술 시술을 혼인 여부 및 개인·커플 여부에 따라 제한하지 않는다.

스웨덴 「유전적 통합성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거커플 및 비혼여성에게도 보조생식술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생명윤리법」과 스웨덴 「유전적 통합성 등에 관한 법률」은 비혼여성도 보조생식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진 또는 다학제팀을 통한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날 아동의 친자관계, 아동의 혈통을 알 권리 및 아동의 양육조건 등에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 등록파트너십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고, 별거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면 민법의 혼인관계 규정이 적용되어 등록동거제도 중 혼인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벨기에 법적 동거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고, ‘법적 동거 선언을 한 두 사람이 공동생활을 하는 상태’를 의미함. 법적 동거를 위해서는 ‘법적 동거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의 PACS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유언이 없을 경우 자동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인과 차이가 발생한다.

영국 「인간 수정 및 배아생성에 관한 법률」은 보조생식술에 의해 태어난 아이는 모의 혼인 또는 시민 파트너십 상대방이 보조생식술 시술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아이의 아버지로 간주된다고 명시함으로써 보조생식술로 태어난 아이의 친자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노동법은 출산휴가 등의 권리를 아버지 뿐 아니라 어머니의 배우자, 동거인, PACS 상대 당사자에게도 인정하고 있다.

스웨덴 육아휴직법은 육아휴직의 권리에 있어서 부모의 동거인을 부모와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다.

1. 프랑스

가. 프랑스 시민연대계약(PACS)

프랑스 PACS는 성별이 같거나 다른 두 명의 성인 자연인이 공동생활을 조직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이다(프랑스 민법 제515조의1).

PACS는 공동 거주지를 정한 지역의 시청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며(프랑스 민법 제515조의3), 공동생활, 물질적 지원 및 상호적인 도움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프랑스 민법 제515조의4).

PACS는 혼인과는 달리 재산 관리에 있어서 별산제를 기본으로 한다(프랑스 민법 제515조의4).

유언으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PACS 당사자는 상대방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프랑스 민법 제515조의6).

〈표 III-1-1〉 프랑스 시민연대계약(PACS)(민법 제515의1~제515의8조)

구분	내용
제515조의1	시민연대계약(PACS)은 성별이 같거나 다른 두 명의 성인 자연인이 공동생활을 조직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제515조의2	다음의 경우에는 시민연대계약(PACS)을 체결할 수 없다: 1° 직계 존·비속 간, 직계 인척 간 및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간 2°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3°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이미 다른 PACS를 맺은 경우
제515조의3	시민연대계약(PACS)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은, 공동 거주지를 정한 시의 시청(지자체)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 앞에서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공동 거주지를 정하는 데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 당사자 중 한 명의 거주지가 있는 시의 가족관계등록 공무원 앞에서 신고해야 한다. 중대한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은 당사자 중 한 명의 주거지나 거주지로 직접 이동하여 시민연대계약을 등록한다. 신고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시민연대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은 서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이 그 계약서에 확인 서명을 한 후 원본을 돌려준다.

구분	내용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은 공동 신고서를 등록하고, 공시 절차를 진행한다. 시민연대계약이 공증인의 공증에 의해 체결된 경우, 공증인은 공동 신고서를 접수하여 계약을 등록하고, 앞서 언급된 공시 절차를 수행한다. 시민연대계약을 수정하는 계약서는, 초기 계약을 등록한 가족관계등록 공무원 또는 공증인에게 제출 또는 송부되어야 하며, 등록을 위해 보관된다. 해외의 경우, 한 명 이상이 프랑스 국적자인 파트너 간의 시민연대계약 공동 신고 및 제3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공시 절차는 프랑스 외교 및 영사 직원들이 수행합니다. 또한 계약 수정 시 필요한 절차도 이들이 처리한다. 2016년 11월 18일 제2016-1547호 법률 제48조 IV항에 따라, 이 규정들은 해당 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12개월 후 첫날부터 시행되며, 그 이후 체결되는 모든 시민연대계약에 적용된다. 또한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지방법원 사무국에 등록된 시민연대계약의 수정 또는 해지 신고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해당 신고는, 초기 등록을 담당한 지방법원 사무국이 위치한 시의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에게 제출 또는 송부되어야 한다.
제515조-3-1항	각 파트너의 출생신고서 여백에는 시민연대계약(PACS) 신고 사실과 상대방 파트너의 신원 정보가 기재된다. 해외에서 출생한 외국 국적자의 경우, 이 정보는 프랑스 외교부 산하 중앙 가족관계등록국의 특별 등록부에 기록된다. 수정 계약(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동일한 공시 절차가 적용된다. 시민연대계약은 등록이 완료된 시점부터 당사자 간에 법적 효력을 가지며, 등록을 통해 확정된 날짜를 갖게 된다. 제3자에게는 공시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만 효력이 발생한다. 수정 계약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16년 11월 18일 제2016-1547호 법률 제48조 IV항에 따라, 이 규정들은 해당 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첫 날부터 시행되며, 그 시점부터 체결된 모든 시민연대계약에 적용된다. 또한,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지방법원 사무국에서 등록된 시민연대계약의 수정 및 해지 신고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해당 신고는 초기 등록을 담당했던 지방법원 사무국 소재 시의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에게 제출 또는 송부되어야 한다.
제515조의4	시민연대계약(PACS)을 체결한 파트너는 공동생활, 물질적 지원 및 상호적인 도움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파트너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물질적 지원은 각자의 능력에 비례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파트너 중 한 사람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위해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는, 양쪽 파트너가 연대책임을 진다. 그러나 명백히 과도한 지출 또는 두 파트너의 동의 없이 체결된 할부 구매 또는 대출의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액 대출이며 여러 건의 대출이라도 그 총액이 해당 가정의 생활수준에 비해 명백히 과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제515조의5	민법 제515-3조 제3항에 언급된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파트너는 자신의 개인 재산에 대해 관리, 사용, 처분할 자유를 유지한다.

구분	내용
	또한, 각 파트너는 PACS 체결 전이나 체결 중에 발생한 개인 채무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단, 민법 제515-4조 마지막 항에서 정한 경우는 예외이다. 각 파트너는 자신이 특정 재산의 단독 소유자임을 파트너 또는 제3자에 대해 모든 수단으로 입증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단독 소유를 입증할 수 없는 재산은, 두 파트너가 각 절반씩 공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한 파트너가 단독으로 동산(가구, 차량 등)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파트너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 사용, 처분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제515조-5-1항	파트너들은 최초 계약 또는 수정 계약에서, 계약이 등록된 이후에 공동으로 또는 각자 취득하는 재산을 공유재산(indivision) 제도에 따르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은 양 당사자가 절반씩 공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여도가 다르더라도 한쪽 파트너가 다른 쪽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515조-5-2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각 파트너의 단독 재산으로 간주된다: 1° PACS 체결 이후, 각 파트너가 어떤 명목으로든 받은 금전 중 재산 취득에 사용되지 않은 금전; 2° 각 파트너가 직접 창작하거나 제작한 재산과 그 부속물; 3° 개인적 성격을 가진 재산; 4° 공유재산 제도(indivision)를 선택한 최초 계약 또는 수정 계약이 등록되기 전, 한 파트너가 소유한 금전으로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일부; 5° 증여 또는 상속을 통해 받은 금전으로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일부; 6° 한 파트너가 상속재산 공유 상태나 증여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입찰 형식으로 취득한 부분. 4°와 5°에 해당하는 금전이 사용된 경우, 그 사실은 재산 취득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재산은 양 파트너가 절반씩 공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파트너 간의 채권 관계만을 발생시킨다.
제515조의6	시민연대계약(PACS)이 해소되는 경우, 민법 제831조, 제831-2조, 제832-3조 및 제832-4조의 규정은 파트너 간에 적용된다. 또한, 사망한 파트너가 유언을 통해 명시한 경우, 민법 제831-3조 제1항의 규정은 생존한 파트너에게 적용된다. 시민연대계약이 한쪽 파트너의 사망으로 종료되는 경우, 생존한 파트너는 민법 제7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료: 프랑스 시민연대계약(PACS)(민법 제515의1~제515의8조)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id/LEGISCTA000006136536/> (인출일: 2025.6.19.)

나. 프랑스 생명윤리법

프랑스 생명윤리법은 보조생식술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프랑스 생명윤리법에서는 보조생식의 대상 및 조건에 대해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커플, 두 여성으로 이루어진 커플, 또는 결혼하지 않은 단독 여성은, 제 L.2141-10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다학제적 임상생물학 의료팀과의 개별 상담을 마친 후, 보조생식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는 특히 혼인 여부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L.2141-2조). 이러한 규정은 한국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비혼커플 또는 비혼여성에게도 보조생식술 시술이 허용되지만, 다학제 의료팀과의 개별 상담 및 심사를 거쳐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프랑스 생명윤리법은 ‘커플 양측 또는 미혼 여성은, 특히 제 L.2143-2조의 규정, 즉 제3자 기증을 통한 보조생식으로 태어난 사람이 기증자의 비식별 정보 및 신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배아 수용에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L.2141-5조), 제3자 생식세포 기증을 통한 보조생식으로 태어난 출생아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 생명윤리법은 ‘의학적 필요가 있는 경우, 의사는 해당 배아 수용에 동의한 커플 또는 비혼여성에 관한 비식별 의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규정하여(L.2141-6조),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날 아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배아 수용에 동의한 수증자의 비식별 의료 정보에도 아동의 이익을 위해 접근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생명윤리법은 ‘요청자인 여성 또는 커플은 센터의 의료 생물학 다학제 팀(의사 한 명 이상 및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또는 정신과 전문 간호사 포함)과 개별 면담을 실시해야 한다. 이 팀에는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 및 가족행동법 제 L.411-2조 2항에 명시된 명부에 등록된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다학제 팀이 수행하는 심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L.2141-10조).

- ① 커플의 양측 또는 비혼여성의 동기를 검토한다.
- ② 의학적 평가를 실시한다.
- ③ 현재의 과학 지식에 따라, 성공 가능성과 실패 가능성, 부작용, 단·장기 위험, 고통과 부담 등 보조생식 기술의 모든 측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 ④ 제3자 기증자를 통한 생식의 경우, 성인이 된 자녀가 기증자의 비식별 정보 및 신원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 ⑤ 커플인 경우, 커플이 이혼했을 때 배아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점, 한쪽 사망 시 적용 규정 등을 설명한다.
- ⑥ 커플 양측 또는 비혼여성에게 안내 파일(dossier-guide)을 제공한다. 이 파일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보조생식 관련 법령 요약
 - 시술 절차 설명
 - 입양 관련 법령 요약 및 관련 기관·단체 정보
 - 제3자 기증 관련 정보, 성인이 된 자녀의 정보 접근 권리, 관련 단체 목록 등

프랑스 생명윤리법은 ‘커플 또는 비혼여성의 동의는 위의 절차를 마친 후 최소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L.2141-10조), 다학제 팀의 심사를 마친 후에도 별도의 숙려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생명윤리법은 ‘보조생식은 보건 안전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면담에 참여한 의사가 시술을 할 수 없다’ 규정한다(L.2141-10조).

- 신청자가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팀과의 협의 후, 추가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는 태어날 아이의 복지를 고려한 판단이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다학제 팀의 심사에 따라 보조생식술 시술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 생명윤리법은 ‘보조생식 시술이 연기되거나 거부된 경우, 요청자가 요구하면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L.2141-10조), 보조생식술 시술 거부 사유에 대한 신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 생명윤리법은 우리나라의 보조생식술 관련 법령과 달리 혼인 여부에 따라 보조생식술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지만, 다학제 팀의 심사를 통해 보조생식술 시술의 적절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실제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날 아이의 복리를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1-2〉 프랑스 생명윤리법(LOI n° 2021-1017 du 2 août 2021 relative à la bioéthique)

구분	내용
Titre Ier : Élargir l'accès aux technologies disponibles sans s'affranchir de nos principes éthiques (Articles 1 à 7) Chapitre Ier : Permettre aux personnes d'exercer un choix éclairé en matière de procréation dans un cadre maîtrisé (Articles 1 à 4) Article 1 L. 2141-2조	제 L.2141-2조 - 보조생식의 대상 및 조건 보조생식(의학적 생식 보조)은 부모가 되려는 계획(출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커플, 두 여성으로 이루어진 커플, 또는 결혼하지 않은 단독 여성은, 제 L.2141-10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다학제적 임상생물학 의료팀과의 개별 상담을 마친 후, 보조생식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는, 특히 혼인 여부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해당 커플의 두 구성원 또는 단독 여성은 인공수정 또는 배아이식 전에 사전에 동의해야 한다. 커플의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인공수정 또는 배아이식이 금지된다: 1° 커플 중 한 명의 사망 2° 이혼 청구가 제기된 경우 3° 별거 청구가 제기된 경우 4° 민법 제229-1조에 따라 상호 합의에 의한 이혼 또는 별거 협약이 서명된 경우 5° 공동생활의 종료 6° 본 조 제3항에서 규정한 동의서를 커플 중 한 명이 서면으로 철회하여 보조생식 담당 의사에게 제출한 경우 보조생식을 받는 커플 또는 여성에게는 추적 연구 참여가 제안되며, 이에 대해 서면 동의를 하게 된다. 보조생식 이용을 위한 연령 요건은 국무회의령(Conseil d'État)으로 정하며, 이는 생식 관련 의학적 위험 및 태어날 아동의 이익을 고려하여 생명윤리청(Agence de la biomédecine)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된다. 보조생식 과정에서 난자 채취(흡입 방식)가 이뤄질 경우, 동시에 자기 난자 보존(자가 난자동결)을 제안할 수 있다.
L. 2141-3조	제 L.2141-3조 - 체외수정 및 배아의 보존·이용에 관한 규정 배아는 오직 제 L.2141-1조에 규정된 보조생식의 범위와 목적 안에서만 체외에서 수정(in vitro)될 수 있다. 현행 의학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커플의 구성원 또는 미혼 여성은, 향후 부모가 되기 위한 계획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배아의 보존이 필요할 수 있는 수의 난자에 대한 수정 시도에 서면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되는 기술을 고려해 보조생식의 성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로 제한된다.

구분	내용
	보존된 배아가 더 이상 부모계획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나, 커플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해당 커플 또는 미혼 여성에게는 이러한 배아의 향후 처리 가능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된다. 커플 양측 또는 미혼 여성은, 이식 또는 보존이 불가능한 배아에 대해, 제 L.2151-5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연구에 제공하는 데에 서면 동의를 할 수 있다. 배아가 보존된 커플 또는 미혼 여성은, 해당 배아가 이식되기 전에는 새로운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보존된 배아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L. 2141-5조	제 L.2141-5조 - 보존된 배아의 타인에 의한 수용에 대한 동의 커플의 양측 또는 미혼 여성은, 제 L.2141-6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보존된 배아가 다른 커플이나 미혼 여성에 의해 수용되는 것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커플의 경우 구성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u>커플 양측 또는 비혼여성은, 특히 제 L.2143-2조의 규정, 즉 제3자 기준을 통한 보조생식으로 태어난 사람이 기증자의 비식별 정보 및 신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배아 수용에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u>
L. 2141-6조	제 L.2141-6조 - 배아 수용 제 L.2141-2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커플 또는 비혼여성은 배아를 수용할 수 있다. 커플의 양측 또는 비혼여성은 배아 수용에 앞서 공증인 앞에서 사전에 서면 동의를 해야 하며, 이 동의의 조건과 효력은 민법 제342-10조에 따라 규율된다. 배아를 수용하는 커플 또는 비혼여성과, 본인의 배아가 수용되는 것에 동의한 커플 또는 미혼 여성은 서로의 신원을 알 수 없다. <u>의학적 필요가 있는 경우, 의사는 해당 배아 수용에 동의한 커플 또는 비혼여성에 관한 비식별 의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의료 정보는 본 조 마지막 항에 언급된 기관에 의해 갱신될 수 있다.</u> 배아 수용에 동의한 커플 또는 비혼여성은 어떠한 형태로든 대가를 받을 수 없다. 배아 수용은 보건 안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규정에는 감염병에 대한 선별 검사 등이 포함된다. 배아 보관 및 수용 절차의 이행은 해당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공공 또는 비영리 민간 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다
L. 2141-10조	제 L.2141-10조 - 보조생식의 시행 절차

구분	내용
	보조생식 시술은 사전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u>요청자인 여성 또는 커플은 센터의 의료 생물학 다학제 팀(의사 한 명 이상 및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또는 정신과 전문 간호사 포함)과 개별 면담을 실시해야 한다. 이 팀에는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 및 가족행동법 제 L.411-2조 2항에 명시된 명부에 등록된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다.</u> <u>이 팀의 의사들은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u> 1. 커플의 양측 또는 비혼여성의 동기를 검토한다. 2. 의학적 평가를 실시한다. 3. <u>현재의 과학 지식에 따라, 성공 가능성과 실패 가능성, 부작용, 단·장기 위험, 고통과 부담 등 보조생식 기술의 모든 측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u> 4. 제3자 기증자를 통한 생식의 경우, 성인이 된 자녀가 기증자의 비식별 정보 및 신원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5. 커플인 경우, 커플이 이혼했을 때 배아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점, 한쪽 사망 시 적용 규정 등을 설명한다. 6. 커플 양측 또는 비혼여성에게 안내 파일(dossier-guide)을 제공한다. 이 파일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보조생식 관련 법령 요약 - 시술 절차 설명 - 임양 관련 법령 요약 및 관련 기관·단체 정보 - 제3자 기증 관련 정보, 성인이 된 자녀의 정보 접근 권리, 관련 단체 목록 등 <u>특히, 부모가 자녀가 기증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성인이 되기 전에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권장한다.</u> <u>커플 또는 비혼여성의 동의는 1~6번 절차를 마친 후 최소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u> <u>보조생식은 보건 안전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면담에 참여한 의사가 시술을 할 수 없다:</u> - 신청자가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팀과의 협의 후, 추가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는 태어날 아이의 복지를 고려한 판단이어야 한다. 제3자 기증자를 수반하는 생식을 원하는 커플 또는 비혼여성은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증인 앞에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u>보조생식 시술이 연기되거나 거부된 경우, 요청자가 요구하면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u> 마지막으로, 다학제 클리닉-생물학팀의 구성은 국무회의령으로 정해진다.

자료: 프랑스 생명윤리법(LOI n° 2021-1017 du 2 août 2021 relative à la bioéthique)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3884384> (인출일: 2025.6.24.)

다. 프랑스 노동법

프랑스 노동법은 ‘임신 중인 여성 또는 의학적 보조 생식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의 배우자인 남성 근로자, 그녀와 시민연대계약(PACS)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각 치료 프로토콜당 최대 3회의 필수 의료 검사 또는 필요한 치료에 동반하기 위해 결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L1225-16), ‘자녀가 출생한 후, 근로자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배우자나 동거인, 또는 어머니와 시민연대계약(PACS)을 맺은 근로자도 25일간의 출산 및 양육 휴가(달력일 기준)를 누릴 수 있으며, 다태아 출산의 경우에는 32일로 연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L1225-35),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의 배우자 뿐 아니라 PACS 관계에 있는 등록동거인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표 III-1-3〉 프랑스 노동법(Code du travail)

구분	내용
L1225-16	제L1225-16조 (2016년 1월 26일 법률 제2016-41호 제87조에 의해 개정됨)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의료 감시의 일환으로, 공중보건법 제L2122-1조에 따라 필수적인 의학적 검사를 받기 위해 여성 근로자에게 결근 허가가 부여된다. 보건법 제2편 제1권 제4편 제1장의 규정에 따라 의학적 보조 생식(난임치료 등)을 받고 있는 여성 근로자 역시 필요한 의료 행위를 위해 결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임신 중인 여성 또는 의학적 보조 생식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의 배우자인 남성 근로자, 그녀와 시민연대계약(PACS)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각 치료 프로토콜당 최대 3회의 필수 의료 검사 또는 필요한 치료에 동반하기 위해 결근할 수 있다. 이러한 결근은 급여 삭감 없이 인정되며, 유급휴가 산정 및 근속기간에 따른 법적 또는 단체협약상의 권리 산정 시 실근무 기간으로 간주된다.
L1225-35	제L1225-35조 (2020년 12월 14일 법률 제2020-1576호 제73조에 의해 개정됨) 자녀가 출생한 후, 근로자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배우자나 동거인, 또는 어머니와 시민연대계약(PACS)을 맺은 근로자도 25일간의 출산 및 양육휴가(달력일 기준)를 누릴 수 있으며, 다태아 출산의 경우에는 32일로 연장된다.

자료: 프랑스 노동법(Code du travail)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section_lc/LEGITEXT000006072050/LEGISCTA000006177854/#LEGISCTA000006177854 (인출일: 2025.6.27.)

2. 스웨덴

가. 스웨덴 「유전적 통합성 등에 관한 법률」

스웨덴 「유전적 통합성 등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에 대해 규정한 사항은 등록된 파트너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규정하여(제6장 제1조, 제7장 제1조), 보조생식술에 있어서 등록동거관계의 상대방은 혼인한 배우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스웨덴 「유전적 통합성 등에 관한 법률」은 ‘담당 의사는 부부, 동거인, 또는 비혼 여성의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술이 적절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인공수정은 태어날 아이가 양호한 환경에서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제6장 제3조, 제7장 제5조), 의료진의 심사를 거쳐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날 아이의 복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보조생식술을 시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스웨덴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비혼여성에게 혼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조생식술이 거부되지는 않으나,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날 아이의 양육환경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 「유전적 통합성 등에 관한 법률」은 ‘보조생식술 시술이 거부된 경우, 부부, 동거인 또는 미혼 여성은 사회복지청(Socialstyrelsen)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6장 제3조, 제7장 제5조), 보조생식술 시술이 거부된 신청자의 재심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재심 권리 보장은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에는 규정되지 않은 것이다.

스웨덴 「유전적 통합성 등에 관한 법률」은 ‘정자기증자에 관한 정보는 별도의 의료 기록에 기재해야 하며, 이 기록은 최소 70년간 보존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제6장 제4조), 기증자 정보 관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그가 성인이 된 경우, 병원에 보관된 별도의 의료 기록에 기재된 기증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제6장 제5조, 제7장 제7조),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아동이 성인이 된 경우 혈통을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표 III-2-1〉 스웨덴 「유전적 통합성 등에 관한 법률」(Lag (2006:351) om genetisk integritet m.m.)

구분	내용
제6장 제1조	제6장. 인공수정 서문 규정 제1조 이 장에서는 여성의 몸에 인위적으로 정자를 주입하는 인공수정(insemination)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장에서 배우자에 대해 규정한 사항은 등록된 파트너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률(2016:18) 개정.
제1조a	치료 조건 제1a조 정자를 기증하는 사람은 성인이어야 한다. 기증자는 인공수정에 정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기증자는 인공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2018:1283 법률에 따라 개정됨)
제1조b	제1b조 여성이 결혼했거나 동거하는 경우, 남편 또는 동거인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인공수정을 실시할 수 있다. (2016:18 법률에 따라 개정됨)
제2조	제2조 - 시설 장소 여성이 결혼하거나 동거하지 않은 남성의 정자를 사용하는 인공수정은, 의료·복지 감독청(Inspektionen för vård och omsorg)의 허가 없이 공공 자금으로 운영되는 병원 외의 장소에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인공수정은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2013:1147 법률에 따라 개정됨)
제3조	제3조 - 특별 심사 제2조에 따른 인공수정의 경우, 담당 의사는 부부, 동거인, 또는 비혼여성의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설이 적절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인공수정은 태어날 아이가 양호한 환경에서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될 수 있다. 인공수정이 거부된 경우, 부부, 동거인 또는 미혼 여성은 사회복지청(Socialstyrelsen)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016:18 법률에 따라 개정됨)
제4조	제4조 - 정자 기증자 선정 제2조에 따른 인공수정의 경우, 담당 의사가 적절한 정자 기증자를 선정한다. 사망한 기증자의 정자는 인공수정에 사용할 수 없다.

구분	내용
	기증자에 관한 정보는 별도의 의료 기록에 기재해야 하며, 이 기록은 최소 70년간 보존되어야 한다. (2018:1283 법률에 따라 개정됨)
제5조	제5조 - 정보에 대한 권리 제2조에 따른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사람, 그가 성인이 된 경우, 병원에 보관된 별도의 의료 기록에 기재된 기증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2018:1283 법률에 따라 개정됨)
제5조a	제5a조 - 정보 열람 및 기재에 관한 권리 제2조에 따른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성인이 된 자는, 서면 요청을 통해 자신의 정보가 기증자에 관한 별도 의료 기록에 기재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청 자체도 해당 의료 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사람은 동일한 기증자의 정자를 통해 태어난 다른 사람들에게 관한 정보 중 별도 의료 기록에 기재된 사항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 (2018:1283 법률에 따라 개정됨)
제5조b	제5b조 - 인공수정 출생 여부 확인 지원 의무 누군가가 자신이 제2조에 따른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요청이 있을 때 해당 인물이 별도의 의료 기록에 기재된 정보가 있는지 알아보는 데 도움을 줄 의무가 있다. (2018:1283 법률)
제7장 제1조	7장. 체외수정 서문 1조 이 장에서는 체외수정에 관한 규정을 둔다. 체외수정이란 여성의 몸 밖에서 난자가 수정되는 것, 그리고 난자가 여성의 몸에 이식되는 것을 말한다. 이 장에서 배우자에 관한 규정은 등록된 파트너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률 (2018:1283).
제2조	치료 조건 제2조 난자 또는 정자 기증자는 성년이어야 한다. 기증자는 난자가 수정되거나 정자가 수정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서면 동의를 해야 한다. 기증자는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법률 (2018:1283).
제3조	제3조

구분	내용
	여성이 배우자나 동거인인 경우, 수정된 난자는 남편 또는 동거인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여성의 몸에 이식될 수 있다. 법률 (2018:1283).
제3조a	3a조 이식하기 위해 수정된 난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다른 여성의 몸에 이식될 수 있다: 1. 처음 치료받은 여성과, 만약 그녀가 배우자나 동거인이 있다면, 그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서면으로 동의했을 것, 2. 처음 치료받은 여성과, 만약 그녀가 배우자나 동거인이 있다면, 그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최소 한 명의 자녀를 부모로서 두고 있을 것, 3. 수정된 난자가 처음 치료받은 여성 자신의 난자이거나, 만약 그녀가 배우자나 동거인이 있다면, 그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정자로 수정되었을 것.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이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 법률 (2018:1283).
제4조	4조 여성의 체내에 이식될 난자가 그 여성 본인의 난자이고, 정자가 그 여성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으로부터 온 경우, 의료 및 복지 감독기관(Inspektionen för vård och omsorg)의 허가 없이는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병원에서만 수정과 난자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난자가 여성 본인의 것이 아니거나 정자가 여성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것이 아닌 경우, 의료 및 복지 감독기관의 허가 없이는 의학 학위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대학병원에서만 수정 및 난자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법률 (2018:1283).
제5조	5조 제4조 2항에 해당하는 치료의 경우, 의사는 부부, 동거인 또는 비혼여성의 의학적, 심리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치료가 적절한지 심사해야 한다. 치료는 태어날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랄 것으로 예상될 때에만 시행될 수 있다. 치료가 거부될 경우, 부부, 동거인 또는 비혼여성은 사회복지청(Socialstyrelsen)에 이 문제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법률 (2018:1283).
제6조	기증자 선택 6조 제4조 2항에 해당하는 치료의 경우, 의사는 적절한 기증자로부터 난자 또는 정자, 혹은 적절히 기증된 수정란을 선택한다. 사망한 기증자의 난자 또는 정자는 수정에 사용할 수 없다. 기증자에 관한 정보는 별도의 기록부에 기재되어야 하며, 이 기록부는 최소 70년간

구분	내용
	보존되어야 한다. 법률 (2018:1283).
제7조	정보 열람 권리 7조 <u>제4조 2항에 따른 치료를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경우, 병원의 별도 기록부에 기재된 기증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u> 법률 (2018:1283).

자료: 스웨덴 유전적 통합성 등에 관한 법률(Lag (2006:351) om genetisk integritet m.m.)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lag-2006351-om-genetisk-integritet-m-m_sfs-2006-351/ (인출일: 2025.6.24.)

나. 스웨덴 육아휴직법

스웨덴 육아휴직법은 ‘부모의 동거인’은 부모와 동일하게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제1조), 이들은 유연근무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제1조a), 등록동거인은 혼인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돌보는 자녀를 위한 육아 휴직법 등 시간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2-2〉 스웨덴 육아휴직법(Föräldradighetslag (1995:584))

구분	내용
제1조	내용: 경과 규정 법 적용 대상자 제1조 근로자는 부모로서 이 법에 따라 고용으로부터 휴직할 권리를 가진다. 특정한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도 휴직할 권리를 가진다. 다음의 사람들은 부모와 동일하게 간주된다: 1. 부모와 사실상 동거하는 배우자, 2. 부모의 동거인 , 3. 아동의 양육을 맡은 특별 지정 후견인, 4. 사회복지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목적으로 아동을 지속적으로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는 사람(예정된 입양부모), 5. 아동의 친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개인 가정에 아동을 지속적으로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위탁가정 부모). 구직자 및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에 관한 규정은 제16조에 규정되어

구분	내용
	있다. 법률 (2018:1953)
제1조a	제1a조 부모인 근로자는 특정한 경우에 이 법의 유연근무제(flexibla arbetsformer)에 관한 규정의 적용도 받을 수 있다. 법률 (2022:1294)

자료: 스웨덴 육아휴직법(Föräldraledighetslag (1995:584))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foraldr-ledighetslag-1995584_sfs-1995-584/ (인출일: 2025.6.25.)

3. 네덜란드

가. 네덜란드 등록파트너십

네덜란드 등록파트너십은 후술하듯이 등록동거제도 중 가장 혼인과 유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 등록파트너십은 ‘별거’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혼인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이 적용된다(제80b조). 등록동반자관계의 핵심은 동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거’를 할 경우 더 이상 등록동반자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네덜란드 등록파트너십은 이혼과 달리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상호 합의에 의해 해소가 가능하지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위해 등록파트너십의 해소를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0c조).

〈표 III-3-1〉 네덜란드 등록파트너십(민법 Titel 5A. Het geregistreerd partnerschap)

구분	내용
제80a조	제80a조 - 등록 파트너십의 요건 1. 개인은 동시에 단 한 사람과만, 그 사람이 동성이든 이성이든, 등록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다. 2. 등록 파트너십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동시에 혼인 상태여서는 안 된다.

구분	내용
	3. 등록 파트너십의 등록은, 시청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등록 증서(akte)를 통해 이루어진다. 4. 등록 파트너십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혼인 여부에 관한 정보와 이전에 등록 파트너십을 체결했거나 결혼했던 경우에는, 그 이전 파트너 또는 배우자의 이름을 명시하여, 당사자 중 한 명의 주소지 관할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단, 당사자 중 적어도 한 명이 네덜란드 국적을 갖고 있으며, 양측 모두 네덜란드 외에 거주하는 경우, 헤이그(s-Gravenhage) 시청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43조 제2항~제4항 및 제46조가 이에 준용된다. 5.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 파트너십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당사자 또는 그 중 한 사람이 등록 파트너십에 따른 법적 의무의 이행이 아니라, 네덜란드 입국 허가를 목적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이러한 중지 절차에는 민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2항 및 제3항, 제54조~제56조가 준용된다. 검찰은 민법 제31조, 제32조, 제41조 및 본 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금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인지한 경우, 등록을 반드시 중지시켜야 한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금지 사유를 인지한 경우, 해당 신고나 등록에 협조해서는 안된다. 중지 절차가 실제로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6. 등록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민법 제31조, 제32조, 제35조제39조, 제41조, 제44조제49조, 제58조, 제62조~제66조가 준용된다. 7. 등록 파트너십의 무효 선언에 대해서는 민법 제69조제73조, 제74조, 제75조제77조 제1항 및 제2항이 준용된다. 8. 등록 파트너십 존재 증명의 방식에 대해서는, 민법 제78조, 제79조, 제80조가 준용된다.
제80b조	제80b조 등록 파트너십에는, "별거(scheiding van tafel en bed)"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민법 제6편, 제7편 및 제8편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80c조	제80c조 - 등록 파트너십의 종료 등록 파트너십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된다: - 사망에 의해; - 이 법 제18권의 제2부 또는 제3부 규정에 따라 실종된 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거나 사망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는 경우 그 생존한 등록 파트너가 새로운 등록 파트너십 또는 혼인을 체결하는 날에, 그 체결로 인하여; - 서로의 합의에 따라, 양 당사자와 한 명 이상의 변호사 또는 공증인이 서명하고 날짜가 기재된 선언서를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이 등록함으로써, 해당 선언서에 등록 파트너십 종료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합의에 도달하였는지가 나타난 경우; - 당사자들 또는 그 중 한 명의 요청에 의한 해산으로;

구분	내용
	e. 등록 파트너십이 혼인으로 전환됨으로써. 2. 제1항 c호에서 언급한 선언서의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 파트너십이 네덜란드 내에서 체결되었을 경우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이 항상 그 권한을 가진다. 만약 파트너십이 네덜란드 외에서 체결되었다면, 등록 파트너십 해산과 관련하여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민사소송법 제4조 제4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이 제1항 c호에서 언급한 선언서를 등록할 권한을 갖는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 c호에 따른 상호 합의에 의한 등록 파트너십의 종료가 인정되지 않는다: a. 당사자들이 한 명 이상의 공동 자녀에 대해,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양육권을 행사하는 경우; b. 민법 제253sa조 또는 제253t조에 따라 한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해 공동 양육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80d조	제80d조 - 등록 파트너십 해산 계약 1. 제80c조 c항에서 언급된 해산 계약에는 최소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양 당사자가 등록 파트너십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이를 종료하고자 한다는 선언. 또한 다음 사항들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나, 누락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a. 한쪽 파트너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수입이 없고, 합리적으로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생활비 지급(부양)에 관한 사항. b. 누가 주거지(당사자들이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는 집)의 임차인이 될 것인지, 혹은 누가 얼마 동안 그 주택과 가재도구(가구 등)를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합의(가구나 주택이 일방 또는 공동 소유/사용일 수 있음). c. 등록 당시 당사자들이 공동 재산제를 선택했을 경우 그 재산의 분할 또는 민법 제8편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합의한 정산 방식. d. 연금권리의 분할 또는 정산에 관한 사항. 2. 상호 합의에 의한 등록 파트너십 해산에는 다음 민법 조항이 준용된다: 제155조,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 제158조, 제159조 제1항 및 제3항, 제159a조, 제160조, 제164조. 3. 제80c조 c항에서 언급된 해산 선언서는, 해산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도달해야만 인구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다.
제80e조	제80e조 - 등록 파트너십의 해산 1. 제80c조 d항에 따른 등록 파트너십의 법원에 의한 해산에는, 민법 제151조, 제153조, 제155조, 제157조부터 제160조, 제164조 및 제165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2. 등록 파트너십의 해산은, 당사자 또는 그 중 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됨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민법 제163조 제3항이 이에

구분	내용
	준용된다.
제80g조	제80g조 - 등록 파트너십의 혼인으로의 전환 1. 두 사람이 자신들이 체결한 등록 파트너십을 혼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에게 알리는 경우, 당사자 중 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이 전환증서(akte van omzetting)를 작성할 수 있다. 단, 등록 파트너 중 적어도 한 명이 네덜란드 국적을 가지고 있고, 양측 모두 해외에 거주하면서 네덜란드에서 등록 파트너십을 혼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그 전환은 헤이그('s-Gravenhage) 시청의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이 처리한다. 2. 민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이 이에 준용된다. 3. 전환증서가 혼인등록부에 작성되는 시점에, 등록 파트너십은 종료되며, 혼인이 시작된다. 이러한 전환은 전환 이전에 출생한 자녀들과의 친자관계 또는 가족법적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료: 네덜란드 등록 파트너십(민법 Titel 5A. Het geregistreerd partnerschap)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sambolag-2003376_sfs-2003-376/ (인출일: 2025.6.20.)

4. 벨기에

가. 벨기에 법적 동거

벨기에 법적 동거는 ‘법적 동거 선언을 한 두 사람이 공동생활을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여(벨기에 민법 제1475조), 등록동반자관계를 규정한 해외 사례 중 가장 인정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PACS와 달리 심지어 인척관계도 법적 동거가 가능하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네덜란드 등록파트너십과는 대조적으로 혼인과 다른 완전히 별개의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벨기에 법적 동거는 ‘각 법적 동거인은 자신에게 속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재산, 해당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 그리고 노동 수입에 대한 권리를 유지한다’고 규정하여(제1478조), 법적 동거 기간 중 발생한 재산에 대해서는 별산제를 원칙으로 함으로 명시한다.

벨기에 법적 동거는 프랑스 PACS와 달리 법적 동거 관계의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무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표 III-4-1〉 벨기에 법적 동거(Cohabitation légale) 벨기에 민법 제1475조~1479조

구분	내용
제1475조	제목 Vbis - 법적 동거에 대하여 [1998년 11월 23일 법률 제2조로 삽입, 발효일: 2000년 1월 1일] 제1475조 §1항. “법적 동거(cohabitation légale)”란, 제1476조에 따른 선언을 한 두 사람이 <u>공동생활을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u> §2항. 법적 동거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결혼 상태가 아니거나, 이미 다른 사람과 법적 동거 중이 아니어야 한다. 2° [민법 제5.40조 및 제5.41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주석: 예외 규정] 민법 제492/1조 §1항 제3문단 제10호에 따라, 법적 동거 선언을 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선언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 사법법전 제628조 3호에 따른 평화판사(juges de paix)의 허가를 받아 법적 동거 선언을 할 수 있다. 이때 평화판사는 해당 보호 대상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제1476조	제1476조 §1. 법적 동거의 선언 법적 동거 선언은, 당사자들이 직접 서면을 작성하여 공동 거주지의 가족관계등록 공무원(officier de l'état civil)에게 접수증을 받고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서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언 날짜 2° 두 당사자의 성명, 이름, 출생지 및 출생일, 서명 3° 공동 거주지 주소 4° 법적 동거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 5° 당사자들이 민법 제1475조~1479조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언급 6° [삭제됨]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은 양 당사자가 법적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인구등록부(registre de la population)에 선언을 기록한다. 당사자들은, 필요한 경우, 요건 충족을 입증하기 위한 공식 서류 또는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이는 다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법적 동거는 해당 선언이 인구등록부에 기재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2. 법적 동거의 종료 법적 동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종료된다: 당사자들이 결혼하는 경우 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본 항에 따라 종료를 선언한 경우 법적 동거 종료 선언은 다음 중 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의한 종료 또는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서면 선언

구분	내용
	이 선언은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에게 접수증을 받고 제출해야 하며, 서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언 날짜 2° 두 당사자의 성명, 이름, 출생지 및 출생일, 서명 (일방 선언 시는 한 사람의 서명만 가능) 3° 두 당사자의 거주지 4° 법적 동거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 ☐ 상호 합의 종료 선언은, 직접 또는 공증된 특별 위임장을 통한 대리인에 의해 다음 중 한 곳의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당사자들이 등록된 인구등록부, 외국인 등록부, 또는 대기자 등록부 관할 시청 또는, 없다면 그 중 한 사람의 관할지 2° 과거 마지막 등록 시청 (존재하는 경우) ☐ 일방적 종료 선언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출하되, 한 당사자만이 제출할 수 있음. ☐ 일방적 종료 선언은,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이 8일 이내에 법원 집행관(huissier de justice)을 통해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 비용은 선언한 사람이 선납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은, 법적 동거의 종료를 인구등록부에 기록하며, ☐ 법적 동거는 이 선언이 인구등록부에 기재된 시점에 종료된다. 특수 규정: 무능력자의 경우 민법 제492/1조 §1항 제3문단 제10호에 따라, 법적 동거 선언이 금지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요청으로, 사법법전 제628조 3호에 따른 평화판사의 허가를 받아 법적 동거를 종료할 수 있다. 평화판사는 그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판단한다. §3. 전자 방식에 대한 규정 국왕은, 법적 동거 선언 및 종료 선언의 전자적 제출 방식에 대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478조	제1478조 (시행일: 2000년 1월 1일) 각 법적 동거인은 자신에게 속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재산, 해당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 그리고 노동 수입에 대한 권리를 유지한다. 어떤 재산이 어느 동거인에게 속하는지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그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공동소유로 간주된다. 만약 생존한 법적 동거인이 사망한 동거인의 상속인인 경우, 위 항에서 언급된 공동소유는 유류분 상속권자에게는 증여로 간주되며, 그에 따른 반증이 없는 한 그렇게 처리된다. 또한 법적 동거인들은 상호 합의에 따라, 법적 동거 생활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증된 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다. 단, 이 계약에는 제1477조,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 친권, 후견, 그리고 법정 상속 순위 규정에 반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이 계약은 공증인(notaris) 앞에서 공증된 형식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구분	내용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자(예: 무능력자로 선언된 자)는 제492/1조 §2, 제3항, 14/1°에 따라 계약 체결 또는 수정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자가 요청하면, 공증인이 작성한 계약 초안을 바탕으로 관할 평화판사(juge de paix)의 허가를 받아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법전 제1241조 및 제1246조가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화판사는 후견인에게 단독 행위 또는 피보호자의 보조 역할을 허용할 수 있다. 이때 제1250조의 절차가 적용되며, 공증계약 초안 사본이 청구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자료: 벨기에 법적 동거(Cohabitation légale) 벨기에 민법 제1475조~1479조
www.ejustice.just.fgov.be/eli/loi/1804/03/21/1804032153/justel#LNK0090 (인출일: 2025.6.20.)

5. 영국

가. 영국 「인간 수정 및 배아생성에 관한 법률」

영국 「인간 수정 및 배아생성에 관한 법률」은 ‘해당 혼인 또는 시민 파트너십의 상대방은 그녀의 자궁에 배아 또는 정자와 난자가 이식되었거나 인공수정이 이루어지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아이의 아버지로 간주된다’고 규정하여(제35조), 보조생식술에 의해 태어난 아이는 모의 혼인 또는 시민 파트너십 상대방이 보조생식술 시술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아이의 아버지로 간주된다고 명시함으로써 보조생식술로 태어난 아이의 친자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 「인간 수정 및 배아생성에 관한 법률」은 ‘두 명의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아동을 신청인들의 자녀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두 명의 신청인은 ‘부부인 경우, 서로 시민결합 상태인 경우, 지속적인 가족 관계로서 사실상 동거하며, 금지된 친족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함으로써(제54조), 혼인 관계 이외에 동거 관계에 있는 사람도 보조생식술에 의해 태어난 아동을 신청인들의 자녀로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표 III-5-1〉 영국 「인간 수정 및 배아생성에 관한 법률」(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2008)

구분	내용
Part 2 Parenthood in cases involving assisted reproduction Meaning of “mother” 33 Meaning of “mother”	33조 “어머니”의 의미 (1) 배아 또는 정자와 난자를 자궁에 이식받아 그 결과로 아이를 임신하거나 임신했던 여성은, 다른 어떤 여성이 아니라, 그 아이의 어머니로 간주된다. (2) 제1항은, 입양에 의해 그 여성이 해당 아동의 어머니로 간주되지 않게 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제1항은, 해당 배아 또는 정자와 난자가 이식된 시점에 그 여성이 영국에 있었는지 또는 외국에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Meaning of “father” 35.Woman married to , or civil partner of, a man at time of treatment	35조 치료 시점에 남성과 혼인 중이거나 [시민 파트너십을 맺은] 여성 (1) 다음의 경우— (a) 배아 또는 정자와 난자의 자궁 내 이식 또는 인공수정이 이루어진 시점에 W가 [남성과] 혼인 관계에 있었거나 [남성과 시민 파트너십 관계에 있었고], (b) 그녀가 임신하게 된 배아가 해당 혼인 또는 시민 파트너십 상대방의 정자가 아닌 정자로 생성된 경우, 제38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르는 범위 내에서, 해당 혼인 또는 시민 파트너십의 상대방은 그녀의 자궁에 배아 또는 정자와 난자가 이식되었거나 인공수정이 이루어지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아이의 아버지로 간주된다. (2) 이 조항은 제1항 (a)에서 언급된 시점에 W가 영국에 있었는지 또는 해외에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36.Treatment provided to woman where agreed fatherhood conditions apply	36조 동의된 부성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여성에게 제공된 치료 다음의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어떤 남성도 그 아이의 아버지로 간주되지 않고, 제42조에 따라 어떤 여성도 그 아이의 부모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a) 배아 또는 정자와 난자가 W에게 이식되었거나, W가 인공수정을 받은 것이 영국 내에서 면허를 가진 자가 제공하는 치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b) 배아 또는 정자와 난자가 W에게 이식되었거나, 인공수정이 이루어진 당시, 면허에 따라 W에게 제공된 치료와 관련하여 어떤 남성과의 사이에서 제37조에 규정된 동의된 부성 조건이 충족되었으며, (c) 그 시점에 해당 남성이 생존해 있었고, (d) W가 임신하게 된 배아는 해당 남성의 정자가 아닌 정자로 생성되었을 경우, 제38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르는 범위 내에서, 해당 남성은 그 아이의 아버지로 간주된다.
37.The agreed	37조 동의된 부성 조건

구분	내용
fatherhood conditions	(1) 제36조 (b)항에서 언급된 동의된 부성 조건은, 면허에 따라 W에게 제공된 치료와 관련하여 남성("M")에 대해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해당된다: (a) M이 책임자에게, 면허에 따라 W에게 제공된 치료로 태어나는 아동에 대해 자신이 아버지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제출했으며, (b) W 역시 책임자에게, M이 그렇게 아버지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제출했으며, (c) M이나 W 중 어느 누구도, (a)항 또는 (b)항에 따른 통지를 한 이후, M이 아버지로 간주되는 데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통지를 책임자에게 제출하지 않았으며, (d) W는 (b)항에 따른 통지를 한 이후 다음 중 어느 것도 책임자에게 제출하지 않았어야 한다: (i) 또 다른 남성이 아버지로 간주되는 데 동의한다는 추가 통지, 또는 (ii) 제44조 제1항 (b)에 따른, 여성이 부모로 간주되는 데 동의한다는 통지, (e) W와 M은 서로 간에 법적으로 금지된 근친 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2) 제1항 (a), (b), (c)에 따른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통지하는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3) 질병, 부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서명할 수 없는 사람("S")이 제1항 (a), (b), (c)에 따른 통지를 할 경우, S의 지시에 따라, S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최소 한 명의 증인이 있는 상태에서 그 증인이 서명을 인증했다면, 이는 제2항의 서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Cases in which woman to be other parent 42.Woman in civil partnership or marriage to a woman at time of treatment	42조 치료 시 동성 여성 간 시민결합 [또는 결혼] 관계에 있는 여성 (1) W에게 배아 또는 정자와 난자를 주입하거나 인공수정을 시행한 시점에, W가 [다른 여성과] 시민결합 관계 [또는 결혼]에 있었던 경우, 제45조 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시민결합 [또는 결혼]의 상대방 여성은 해당 아동의 부모로 간주된다. 다만, 그녀가 W에 대한 배아 또는 정자와 난자의 주입이나 인공수정에 동의하지 않았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시점에 W가 영국에 있었는지 또는 해외에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이 조항은 적용된다.
Parental orders 54.Parental orders: two applicants	54조 - 부모 명령 [두 신청인] (1) 두 명의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아동을 신청인들의 자녀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a) 아동이 신청인 중 한 명이 아닌 여성이, 배아 또는 정자와 난자의 이식 또는

구분	내용
	인공 수정 결과로 출산한 경우
	(b) 배아 생성에 적어도 한 명의 신청인의 배우자가 사용된 경우
	(c) 제2항부터 [8A항]까지의 조건들이 충족된 경우
	(2) 신청인은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a) 부부인 경우
	(b) 서로 시민결합 상태인 경우
	(c) 지속적인 가족 관계로서 사실상 동거하며, 금지된 친족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두 사람
	(3) 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은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4) 신청 시점과 명령 선고 시점에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a) 아동이 신청인들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b) 신청인 중 적어도 한 명은 영국, 채널 제도 또는 맨 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5) 명령 선고 시점에 신청인 모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6) 법원은 다음 사람들 모두가 자유롭게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조건 없이 명령에 동의했음을 확인해야 한다:
	(a) 아동을 출산한 여성
	(b) 신청인 중 한 명이 아닌 아동의 다른 부모 (예: 제35조 또는 36조에 의한 아버지, 제42조 또는 43조에 의한 여성 부모)

자료: 영국 인간 수정 및 배아생성에 관한 법률(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2008)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8/22/contents> (인출일: 2025.6.24.)

나. 영국 공동 육아휴직 규정

영국 공동 육아휴직 규정을 보면 부모가 혼인 관계일 뿐 아니라 시민 파트너 또는 동거인인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제1장 제3조).

이에 따라 아버지 뿐 아니라 모의 동거인도 아동을 돌보기 위해 공동 육아휴직(shared parental leave)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장 제5조).

〈표 III-5-2〉 영국 공동 육아휴직 규정(The Shared Parental Leave Regulations 2014)

구분	내용
제1장 제3조	3.—(1) 본 규정에서 — “C”는 공동 육아휴직(shared parental leave)의 권리가 발생한 아동을 의미한다. “M”은 C의 어머니(또는 임신 중인 어머니)를 의미한다. “P”는 C의 아버지 또는 C가 출생한 날에 M과 혼인했거나, M의 시민 파트너(civil partner)이거나, M의 동거인(partner)인 사람을 의미한다. “partner”(동거인)는 M 또는 A와 관련하여, M 또는 A 및 C와 함께 지속적인 가족 관계로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때 해당 인물은 M 또는 A의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이모·고모·삼촌, 조카가 아니어야 한다.
제5조	아버지 또는 파트너의 공동 육아휴직 권리 5.— (1) P(아버지 또는 동거인)는 제2장에 따라 C(아동)을 돌보기 위해 공동 육아휴직(shared parental leave)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P가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M(어머니)이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2) P가 충족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a) P는 계속 근로 요건(continuity of employment test)을 충족해야 한다 (제35조 참조); (b) C의 출생일 당시, P가 C에 대한 주된 양육 책임자여야 한다 (단, M의 책임은 제외); (c) P는 공동 육아휴직 자격에 대한 고지를 고용주에게 통지했어야 한다 (제9조 참조); (d) P는 고용주에 대한 증빙자료 요건(제10조 제3항~제5항)을 충족했어야 한다; (e) P는 휴직기간 통지(period of leave notice)를 제12조에 따라 제출했어야 한다. (3) M이 충족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a) M은 고용 및 소득 요건(employment and earnings test)을 충족해야 한다 (제36조 참조); (b) C의 출생일 당시, M이 C에 대한 주된 양육 책임자여야 한다 (단, P의 책임은 제외);

구분	내용
	(c) M은 C에 대해 법정 출산휴가, 법정 출산수당(stat. maternity pay) 또는 출산수당(maternity allowance)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 (d) 다음 중 해당하는 경우, M은 출산휴가 또는 수당을 조기 종료(curtail)했어야 하며, 해당 종료기간도 유지 중이어야 한다: (i) M이 법정 출산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M은 1996년 법(Employment Rights Act 1996) 제71조(3)(ba) 또는 제73조(3)(a)에 따라 출산휴가를 조기 종료했고, 해당 휴가가 종료된 상태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출산휴가 종료 전에 직장에 복귀했어야 한다. (ii) M이 법정 출산휴가 자격은 없으나 출산수당(stat. maternity pay)을 받을 수 있는 경우: M은 1992년 법(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Benefits Act 1992) 제165조(3A)에 따라 해당 수당 지급기간을 조기 종료했어야 한다(그리고 그 종료기간도 유지 중이어야 함). (iii) M이 출산휴가도, 출산수당도 받을 수 없으나 출산수당(maternity allowance)을 받을 수 있는 경우: M은 같은 법 제35조(3A)에 따라 해당 수당 지급기간을 조기 종료했어야 한다(그리고 그 종료기간도 유지 중이어야 함). (4)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동일한 임신으로 태어난 자녀의 수(예: 쌍둥이, 세쌍둥이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료: 영국 공동 육아휴직 규정(The Shared Parental Leave Regulations 2014)

<https://www.legislation.gov.uk/ukdsi/2014/9780111118856/contents> (인출일: 2025.6.25.)

IV

관련 법안

- 01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 0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IV. 관련 법안

1.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중 용혜인 의원안(2023.4.26.)과 장혜영 의원안(2023.5.31.)은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는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과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해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용혜인 의원안(2025.9.3.)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용혜인 의원안(2023.4.26.)과 생활동반자관계의 정의에서 차이가 있고 다른 내용은 유사하다.

〈표 IV-1-1〉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용어 정의

구분	내용
용혜인의원 대표발의(2025.9.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동반자관계”란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말한다.
용혜인의원 대표발의(2023.4.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동반자관계”란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말한다.
장혜영의원 대표발의(2023.5.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생활동반자관계”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혼인 중이 아닌 성인과 다른 혼인 중이 아닌 성인 1인이 합의 하에 일상생활, 가사 등을 공유하고 생활돌봄을 상호적으로 주고받는 관계를 말한다.

용혜인 의원안(2023.4.26.)은 생활동반자 관계 당사자에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출산휴가, 인적공제, 가정폭력방지 등의 제도에서 혈연·혼인에 의한

가족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 한다는 점에서 장혜영 의원안(2023.5.31.)과 차이가 있다.

〈표 IV-1-2〉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2023.4.26.)

구분	내용
제안이유	현행 법체계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지 못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생활동반자관계에 법적 지위와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강화
주요내용	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되,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은 가정법원장에게,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은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성년이 된 사람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되, 혼인 중에 있는 사람, 생활동반자관계 중에 있는 사람은 다른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존의 가족관계와 생활동반자관계의 중복을 금지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생활동반자관계의 효력은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지원에 당사자 쌍방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생기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쌍방이 해소에 합의를 하거나 일방이 해소를 원하는 경우,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또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간 혼인이 성립한 경우에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해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2조). 사.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는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및 부칙 제2조제1항). 아.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교부 청구, 인터넷 또는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발급 및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자.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출산휴가, 인적공제, 가정폭력방지 등의 제도에서 혈연·혼인에 의한 가족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안 부칙 제2조제2항부터 제25항까지)

자료: 용혜인의원 대표발의(2023.4.26.)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647).

〈표 IV-1-3〉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의원 대표발의(2023.5.31.)

구분	내용
제안이유	비혼·비혈연 공동체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가 미비하여 법률 제정을 통해 생활동반자관계의 법적 지위·권리를 명확히 하고자 함.

구분	내용
주요내용	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되,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은 가정법원장에게,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은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성년이 된 사람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되, 혼인 중에 있는 사람, 생활동반자관계 중에 있는 사람은 다른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존의 가족관계와 생활동반자관계의 중복을 금지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생활동반자관계의 효력은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 당사자 쌍방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생기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쌍방이 해소에 합의를 하거나 일방이 해소를 원하는 경우,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또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간 혼인이 성립한 경우에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해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9조). 사.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는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아.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교부 청구, 인터넷 또는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발급 및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자료: 장혜영의원 대표발의(2023.5.31.)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404).

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 의원안(2023.5.31.)은 용어의 정의에서 난임을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에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보조생식술 등 출산 지원과 그 밖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임신 지원사업으로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조생식술 시술 등 임신 유도 및 촉진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수진 의원안(2023.6.29.)은 난임의 정의를 수정하고, 비혼시술임신의 정의를 추가하였다. 여기서 ‘비혼시술임신’은 혼인하지 않은 성인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통

한 임신을 말한다.

강민정 의원안(2023.8.3.)은 용어의 정의에서 난임을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에 여성이 임신·출산의 여부, 방법 및 시기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보조생식술 시술 지원사업으로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을 위하여 보조생식술 시술을 필요로 하는 성인 여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재강, 정혜경, 강경숙 의원안(2025.10.15.)은 난임의 정의에서 부부를 삭제하고 비혼임신시술의 정의를 추가하였다. 여기서 ‘비혼임신시술’은 혼인(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 있지 않은 성인 여성에 대하여 임신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표 IV-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어 정의

구분	내용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2023.5.31.)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보조생식술 등 출산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임신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조생식술 시술 등 임신 유도 및 촉진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2023.6.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난임(難妊)”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3. “비혼시술임신”이란 혼인하지 않은 성인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통한 임신을 말한다.
강민정의원 대표발의 (2023.8.3.)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이 임신·출산의 여부, 방법 및 시기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임신·출산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생식술 시술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을 위하여 보조생식술 시술을 필요로 하는 성인 여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재강, 정혜경,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4.10.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난임(難妊)”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 가. 생식 능력 장애가 진단되지 않은 성인인 남성과 여성이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

구분	내용
	나. 생식적 병력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하여 자연적인 생식과정으로는 임신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정자나 난자의 기증 등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상태 13. “비혼임신기술”이란 혼인(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 있지 않은 성인 여성에 대하여 임신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표 IV-2-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 정혜경,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2024.10.15.)

제안 이유	개정(안) 주요내용
- 현재 국가의 주요 과제인 초저출생 문제 대응과 관련해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OECD 국가의 비혼출산 비율과 국가 출산율은 비례하였으며, 프랑스의 경우 비혼출산 비율이 62.2%로 출생률 세계 1위임. - 현행법은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여성, 즉 비혼(非婚) 상태에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임신을 위한 보조생식술을 지원하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난임 시술 지원 또한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정을 혼인 여부에 따라 제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의 보장과 배치된다는 의견이 있는 바 개정이 필요함. - 또한, 현행법을 비롯한 관계 법률에서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현재 의료계에서는 난임을 ‘부부’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을 근거로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바, 비혼여성의 임신·출산을 위해서는 동 법률의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이에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생식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는 한편, 난임의 정의 중 부부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이의 행복추구권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13호 신설 등). - 제2조제11호 중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생식 능력 장애가 진단되지 않은 성인인 남성과 여성이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 나. 생식적 병력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하여 자연적인 생식과정으로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정자나 난자의 기증 등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상태 13. “비혼임신기술”이란 혼인(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 있지 않은 성인 여성에 대하여 임신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자료: 이재강, 정혜경,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2024.10.1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693).

〈표 IV-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2023.5.31.)

제안 이유	개정(안) 주요내용
- 비혼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저출생 사회 해소를 위해 비혼출산의 법적 보호를 시작으로 인구정책의 근본적 변화 모색 - 법률혼 관계인 부부의 난임 극복	- 임신 및 출산의 어려움을 비정상적 관점에서 정의한 “난임(難妊)” 정의 규정 삭제 · 제2조제11호 삭제: “난임(難妊)”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안 이유	개정(안) 주요내용
으로만 한정시킨 보조생식술을 임신을 원하는 사람에게 확대하고 기존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임신지원상담센터로 변경하는 등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비혼출산을 법적으로 보호	-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조생식술 등 출산 자원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함(안 제3조제3항 신설). -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이 아닌 임신을 원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으로 개정(안 제11조제1항)하고, 난임시술을 보조생식술시술로,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임신지원상담센터로 개정(안 제11조의2부터 안 제11조의4까지).

자료: 장혜영의원 대표발의(2023.5.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394)

〈표 IV-2-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2023.6.29.)

제안 이유	개정(안) 주요내용
- 임신을 원하는 비혼여성이 보조생식술 시술을 통해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보장하고, 이에 따른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비혼시술임신 정의 신설 · 제2조제13호 신설: “비혼시술임신”이란 혼인하지 않은 성인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통한 임신을 말한다. - 비혼시술임신을 위한 시술비 지원 근거 마련 · 제11조 제목, 제11조제1항, 제11조의2, 관련 법 조문의 표제 및 문언 개정, 하위 항목(호) 신설: 제11조의 제목 중 “난임극복”을 “난임극복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난임”을 “비혼시술임신 및 난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난임극복”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 2에 “비혼시술임신을 위한 시술비 지원” 신설 - 제11조의2의 제목 중 “난임시술”을 “난임시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난임치료”를 “난임치료 및 비혼시술임신을 위한 시술”로 한다. - 제11조의3제1항 중 “난임시술이”를 “난임 및 비혼시술임신을 위한 시술이”로 한다.

자료: 이수진의원 대표발의(2023.6.2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956).

〈표 IV-2-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대표발의(2023.8.3.)

제안 이유	개정(안) 주요내용
- 보조생식술 시술을 통해 비혼여성의 임신,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여 여성의 재생산 권리 확대에 기여 -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의 여부나 방법, 시기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긍정하여 더욱 포용력 있는 사회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 -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의 부부만을 전제로 한 난임의 정의규정을 삭제 · 제2조제11호 삭제: “난임(難妊)”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 임신을 원하는 성인 여성이 원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시술을 통하여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신설 및 관련 용어 개정 · 제3조제3항 신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이 임신·출산의 여부, 방법 및 시기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임신·출산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안 이유	개정(안) 주요내용
것으로 기대	· ‘난임’, ‘난임시술’ 및 관련 용어를 ‘보조생식술을 통한 임신출산’, ‘보조생식술 시술’ 등으로 개정(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및 제11조의6)

자료: 강민정의원 대표발의(2023.8.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650).

보조생식술의 허용범위 및 관련 쟁점

- 01 보조생식술의 허용범위에 대한 관련 법령의 해석
- 02 비혼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 03 보조생식술 출생자의 친자관계
- 04 기증자 등록관리 및 보조생식술 출생자의 혈통을 알 권리
- 05 보조생식술 출생자의 양육지원
- 06 소결

V. 보조생식술의 허용범위 및 관련 쟁점

1. 보조생식술의 허용범위에 대한 관련 법령의 해석

가. 보조생식술의 종류

1)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AI)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AI)은 정자를 채취하여 자궁경부(cervix) 또는 자궁(uterus)에 주입함으로써 수정란을 생성시키는 수정(fertilization) 방법으로 여성의 자연적인 배란주기에 맞추거나 인공적으로 여성성의 과배란 유도(controlled ovarian insemination: COS)를 통해 이루어진다(이준일, 2022: 3). 인공수정은 자궁 내 정자주입(intrauterine insemination: IUI)과 자궁경부 내 정자주입(intracervical insemination: ICI)으로 구분된다(이준일, 2022: 3).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의2(보조생식술의 범위) 제1호는 인공수정을 ‘남성의 정자를 채취 및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자궁내 정자주입 기술’로 규정하고 있다.

안공수정은 파트너의 정자를 사용하느냐 여부에 따라 파트너의 정자를 사용하는 파트너 인공수정(AI with partner's sperm)과 파트너가 아닌 정자기증자의 정자를 사용하는 기증자 인공수정(AI with donor sperm: AID)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준일, 2022: 3).

2)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 IVF)

체외수정은 시험관 시술(in vitro fertilization: IVF)을 지칭하는데 정자와 난자를 채취하여 시험관에서 수정하여 배아를 생성시킨 후 자궁에 착상시키는 방법을 의미한다(이준일, 2022: 3).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의2(보조생식술의 범위) 제2호는 체외수정을 ‘여성

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채취한 후 체외에서 수정 및 배양하여 발생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이식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체외수정 배아이식술(이하 “체외수정 시술”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체외수정 방식에 의한 인공임신에 대해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서 규제하고 있다(이준일, 2022: 7).

1) 배아생성의 개념 및 목적

생명윤리법 제2조제3호는 “배아”(胚芽)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發生學的)으로 모든 기관(器官)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細胞群)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생명윤리법 제23조(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제1항은 ‘누구든지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배아 생성이 목적은 임신에 한정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2) 배아생성 시 금지행위

생명윤리법 제23조(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제2항은 ‘누구든지 배아를 생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미성년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이다.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하여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생명윤리법 제23조제3항은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배아, 난자, 정자의 제공 및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생명윤리법의 규정은 보조생식술을 이용함에 있어서 혼인 여부를 기준으

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당사자의 동의

생명윤리법 제24조(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제1항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난자 기증자, 정자 기증자,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이하 “동의권자”라 한다)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명윤리법의 이 규정은 배아생성 시 난자 기증자, 정자 기증자,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생명윤리법 제24조제1항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규정한 취지는 시술대상자 등이 기혼자라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시술대상자 등이 미혼이거나 또는 기혼이었으나 이혼 또는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구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의 동의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윤석찬, 2023: 295 ; 이지은, 2023: 177).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해당 없음’으로 표기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만약 비혼여성과 같이 배우자가 없는 시술대상자에게 보조생식술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배우자가 있는 시술대상자에게만 보조생식술을 허용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면 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 서식(별지 13호)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을 표기할 난을 둘 이유가 없고, 배우자의 동의 여부만을 표기할 난을 두었을 것이다(윤석찬, 2023: 295). 이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시술대상의 경우 ‘해당 없음’의 표기만 하면 시술대상자의 단독 결정으로 보조생식술 시술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윤석찬, 2023: 296).

보건복지부의 해석 역시 비혼자 보조생식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은 없으며, 생명윤리법 제24조에 따라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고, 동법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으로부터 지정받은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만 존재하기 때문에, 비혼여성의 시험관 시술은 금지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2: 3-4).

다.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제11호는 ‘난임(難妊)’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 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1조제2항은 난임극복사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 ②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 ③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 ④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22년 10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조생식술 시술대상자를 비혼여성에 확대하는 것을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을 상대로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동학회 이사장은 비혼여성은 난임의 대상이 아니기에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윤석찬, 2023: 299). 이는 모자보건법은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므로 모자보건법상 보조생식술은 혼인 여성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윤석찬, 2023: 299).

그러나 「모자보건법」은 그 입법취지가 난임부부를 행정적 또는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며, 비혼여성이 보조생식술의 대상으로 허용되는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윤석찬, 2023: 299).

「모자보건법」이 규정하는 난임시술에 대한 규정들의 입법목적은 난임부부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있다는 점에서 「생명윤리법」이 규정하는 체외수정에 관한 규정들의 입법목적인 배아의 생성과 이용에 관한 생명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입법 목적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이준일, 2022: 17).

라.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체외수정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관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및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사실상의 부부를 포함한다)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체외수정시술과 정자 공여 모두 수증자가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에 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조생식술 전문 병원들은 이러한 윤리지침의 내용을 근거로 비혼여성에게 체외수정시술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시술을 거부하고 있다(최인선, 유수정, 2023: 117).

이에 따라 비혼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산부인과에서는 가임력 보존을 위한 냉동난자 시술 외에는 보조생식술 시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김진희, 2024: 12). 시험관 시술은 체외에서 정자와 난자를 수정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는 시술이나, 인공수정은 정자를 인위적으로 자궁에 주입하여 자연적으로 수정시키는 시술로 자연 임신 과정과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에도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진희, 2024: 12).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이 혼인(사실혼 관계 포함) 관계에 있지 않은 비혼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생명윤리법」에서 정자 또는 난자를 매매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2: 3). 부부 관계인 경우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하거나 사용할 때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결정이 가능한 혼인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보다 다른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사용할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22: 3).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이 비혼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접수되었고, 그 진정의 요지는 정부 정책이나 법률상 금지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윤리지침에서 시술대상을 혼인 관계(사실혼 관계 포함)로 한정하고 있어 배우자가 없는 비혼여성의 출산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이라는 것이다(최인선, 유수정, 2023: 117).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서 보조생식술 시술을 혼인 관계(사실혼 관계 포함)에 있는 자에게만 보조생식술 시술을 허용하는 이유로 「생명윤리법」에서 금지하는 정자 또는 난자의 매매 목적의 제공을 들면서, 혼인 관계이므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보다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의 결정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다른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하였으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 사례나 통계, 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동의 절차는 단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국한된 규정이므로 보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판단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2: 11).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개인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2:11).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대한산부인과학회장은 제3자의 생식능력을 이용하여 보조생식술로 출산하는 것은 정자 기증자 및 출생아의 권리 보호를 포함하여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률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독신자의 보조생식술을 허용하는 국가들은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도 허용하고 있어, 독신자 뿐 아니라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 허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22.9.30.).

2. 비혼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의해서 보장되는 자기결정권은 국가의 간섭없이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비혼여성이 보조생식술을 통하여 임신을 결정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윤석찬, 2023: 300).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여성의 고유한 헌법적 권리로 특별한 합리적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여성의 이러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차등적으로 부여할 수 없다(이준일, 2022: 5).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결정(헌법재판소 2019.4.11., 2017헌바127 결정)에서 “일반적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는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기본조건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데,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된다(헌법재판소 2015.2.26., 2009헌바17 등)”고 보았으며,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자기결정권이 성별에 관계없이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 특히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여성에게 있어 이와 관련한 결정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헌재 2012.8.23., 2010헌바402)고 판단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2: 9-10).

이에 따라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러한 자기결정권에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김진희, 2024: 13). 이러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혼인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되며, 비혼여성에게도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김진희, 2024: 14).

3. 보조생식술 출생자의 친자관계

타인의 생식세포를 기증받아 태어난 출생아와 그 부모의 관계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이수형 외, 2023: 48).

제3자 정자 기증을 통한 보조생식술로 출생한 아동의 친생자 관계에 대한 결정한 대법원 2019년 10월 23일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한 출생자와 부(父)의 친생자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김은애, 2020: 97).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적용되는 「민법」상 친생추정에 관한 규정의 문언과 체계를 보면, 이 규정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자녀에 대

해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런 방법으로 출생한 자녀도 여기에서 말하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포함되면 이 규정을 적용받는데 문제가 없다(김은애, 2020: 97).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 취지는 자녀가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김은애, 2020: 97).

대법원은 특히,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을 통해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남편은 동의 방법으로 자녀의 임신과 출산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친생추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근거이므로, 남편이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김은애, 2020: 98).

독일 사례를 보면 독일민법 제1600조제4항은 모와 보조생식술에 동의한 남성(부 또는 파트너)은 부자 관계에 있어서 친생부인이 배제되며, 동의한 남성(부 또는 파트너)은 부자 관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조은희, 2023: 493). 이에 따라 보조생식술에 동의한 파트너인 남성은 부모의 역할을 포기할 수 없으며,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가지는데, 기본적으로 자녀를 낳기로 한 결정은 유전적 혈통을 대신하는 것이다(조은희, 2023: 493).

이에 대한 입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배경은 출생자에 대한 양육책임의 문제인데, 부모가 될 의지가 있고, 양육을 부담할 준비와 의사가 있는 사람이 부모가 될 때 아동의 복리가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조은희, 2023: 493).

독일의 정자기증등록법에서는 제3자 정자 기증에 의한 보조생식술에 의해 출생한 아동은 정자 기증자를 상대로 하는 재판상의 인지는 배제된다(이동수, 2017: 235). 이에 따라 정자 기증자가 아동의 부가 될 수는 없다.

보조생식술을 통해 출생하는 아동의 친자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자녀를 갖고자 하는 부모의 의사를 기준으로 친자관계를 성립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홍운선, 2025: 358).

다른 한편으로 생식세포를 기증한 제3자의 출생아에 대한 친자관계는 배제되어야 할 것인데, 아동과의 친자관계 형성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 이루어 인지를 통해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3자 기증에 의한 보조생식술로 출생한

자는 혼인 중 출생자로 다루어 친생부인의 소가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홍윤선, 2025: 359).

4. 기증자 등록관리 및 보조생식술 출생자의 혈통을 알 권리

생식세포 기증자에 대한 등록관리는 하고 있지 않다(이수형 외, 2023: 48). 다만, 난자 기증자 보호를 위해 「생명윤리법」 시행령 제11조는 난자채취의 빈도를 평생 최대 3회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한 난자 기증자의 난자채취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이수형 외, 2023: 48).

타인의 생식세포를 기증받아 태어난 출생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이수형 외, 2023: 48).

프랑스에서는 「생명윤리법」에 의해 생식세포 또는 배아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원정보(성명, 성별, 출생지 및 출생장소) 및 비신원정보(나이, 가증 시 건강상태, 가족 및 직업상황, 신체적 특성, 기증동기)를, 생식세포 기증으로 출생한 아동이 성년이 되어 요구하는 경우에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아동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된다(이지은, 2023: 192). 생식세포 기증은 무상성 및 익명성 원칙을 유지하므로 보조생식술 시술의 대상이 되는 자는 기증자의 신원을 모르고, 기증자도 출생아의 부모의 신원에 대해 알지 못한다(이지은, 2023: 192). 기증자의 신원이 밝혀지더라도 기증자와 출생아 간 친자관계는 성립할 수 없고, 기증자는 출생자의 신원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이지은, 2023: 192).

독일의 정자기증등록법에서는 정자 기증자에 대한 정보가 특정 등록부에 등록되며, 정자기증을 통해 출생한 아동은 16세가 되면 정자 기증자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를 보장받는다(조은희, 2023: 507). 그러나 독일의 정자기증등록법에서 제3자 기증에 의한 보조생식술을 통한 출생아는 정자 기증자에게 인지청구를 할 수 없으며, 부모의 양육권, 부양권 및 상속권의 영역과 자녀의 혈연관계를 알 권리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조은희, 2023: 507).

그러나 출생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면 정자 기증자는 자신의 정보가 원하지 않게 공개됨으로써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 있을 때에는 최소한 정보공개 4주 전에는 정보공개

의 임박성과 관련된 사실을 정자 기증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이동수, 2017: 260).

5. 보조생식술 출생자의 양육지원

타인의 생식세포를 기증받아 태어난 출생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이수형 외, 2023: 48).

가. 국내 사례

1) 관련 법령

「생명윤리법」 및 「모자보건법」에서는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의 양육에 관한 고려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정자 수증자의 조건으로 ‘시술 대상 부부는 정자 공여 시술로 태어난 출생아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출생아는 제반 문제에 있어서 친자와 동일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난자 수증자의 조건으로 ‘시술 대상 부부는 난자 공여 시술로 태어난 출생아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출생아는 제반 문제에 있어서 친자와 동일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상으로 양육할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자격요건 및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최인선, 유수정, 2023: 120).

2)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양부모의 자격요건

보조생식술 관련 국내 법령은 보조생식술을 통한 출생아의 복리를 고려한 수증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법령 중에서 아동 복리를 고려한 부모됨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사례를 검토할 수 있다(최인선, 유수정, 2023: 127).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8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제1항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 ① 양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

- ②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③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 없이 있을 것
- ④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심각한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
- ⑤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나이는 25세 이상이어야 함.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8조제2항은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8조제3항은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9조(입양의 신청 등)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9조제2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제1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제21조(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1항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1조제4항은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에게 입양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동법 제21조제5항은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 양육능력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제25조(입양의 효력)는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에 따른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제1항은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한다.

- ① 3년 이상 혼인한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 ③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 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민법」 제908조의2제3항은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은 「민법」상 친양자 입양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 요건에는 양부모의 혼인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민법」상 친양자의 입양 요건에는 양부모가 3년 이상 혼인한 부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은 양부모의 자격요건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자격요건 심사 절차를 더 까다롭게 규정함으로써 입양할 아동의 복리를 더욱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보조생식술 관련 법령에서도 태어날 아동의 복리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 여부보다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부모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심사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조생식술 허용범위를 입양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프랑스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예전부터 비혼 상태에서의 입양을 허용함으로써 입양을 통해 한부모의 친자 관계가 허용되는 것을 인정하였다(이지은, 2023: 182).

프랑스 참사원은 2018년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입양과 보조생식술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이지은, 2023: 182).

- ① 입양은 이미 출생한 아이, 모종의 사유로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이를 받아들이는 문제이며, 보조생식술은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 자녀를 임신하는 문제이므로, 입양의 영역에서 비혼여성의 친자관계를 인정하였다는 사실이, 부계혈통을 삭제하는 보조생식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양과 보조생식술은 법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 ② 입양의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자녀를 갖고자 하는 부부의 계획을 확인하고 입양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법관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조생식술을 이용하려는 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만으로는 입양절차에 버금가는 확실성이 없다.
- ③ 보조생식술의 허용은 평등의 원칙 및 자녀에의 권리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9년 프랑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 보조생식술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이 포함되었고, 2021년 「생명윤리법」이 개정되어 모든 여성에게 보조생식술이 허용되었다(이지은, 2023: 184).

이러한 프랑스 사례는 보조생식술 허용범위에서 보조생식술을 통해 출생할 아동의 복리를 고려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 해외 사례

1) 영국

영국의 「인간 수정 및 배아생성에 관한 법률」(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ct, HFE법)은 2008년 전면 개정 후 비혼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주

체를 대상으로 보조생식술의 대상을 확대할 뿐 아니라 동시에 아동이 복지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였다(최인선, 유수정, 2023: 121).

영국의 「인간 수정 및 배아생성에 관한 법률」은 23세부터 39세까지의 비혼여성이 보조생식술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비혼여성의 난자를 더 안전하게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해 보존 대상, 보존 기간 뿐 아니라 난자의 관리 및 처분 등에 대한 동의권자가 사망하거나 정신적으로 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보존된 생식세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명시하여 구체적인 정보에 입각한 동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루링원, 지성우, 김지희, 2024: 109).

2008년 개정 이후의 영국 「인간 수정 및 배아생성에 관한 법률」은 지원적 양육(supportive parenting)에 대한 자녀의 필요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 형태에 관계없이 아동의 양육지원을 보장할 수 있다면 보조생식술을 통한 임신 및 출산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루링원, 지성우, 김지희, 2024: 109).

영국 「인간 수정 및 배아생성에 관한 법률」 실무규정(code of practice)에 의하면 예비 시술대상자인 여성이 태어날 아동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지 대해 평가를 시행하는데, 예비시술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전과, 아동 보호 조치 경험, 가정폭력, 정신적신체적 조건, 유전적 장애의 가능성, 약물중독 등 아동학대와 방임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의 조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한다(최인선, 유수정, 2023: 122).

2) 프랑스

2021년 개정된 프랑스 생명윤리법은 부부 또는 비혼여성의 사전 인터뷰를 통한 동기 확인 의무와 보조 생식술로 출생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루링원, 지성우, 김지희, 2024: 112).

부부와 비혼여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시술 신청자의 경우 보조생식술 시술을 받기 전에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정신과 관련 경험이 있는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의료팀과 개별 인터뷰를 진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루링원, 지성우, 김지희, 2024: 112).

- ① 부부 또는 비혼여성이 보조생식술 시술을 받고자 하는 동기를 확인

- ② 부부 또는 비혼여성이 보조생식술을 시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평가를 실시
- ③ 부부 또는 미혼여성에게 보조생식술을 통한 임신 성공 또는 실패 가능성, 장단기 부작용 및 위험, 수반될 수 있는 어려움과 제약에 대한 고지
- ④ 제3자 기증자가 보조생식 지원을 하는 경우, 부부 또는 비혼여성에게 기증자에 대한 비신원 자료 및 제3자 기증자 신원 사항 접근 방법을 고지
- ⑤ 부부의 경우 결별 시 보존된 배아 이식은 불가능하고,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보존된 배아가 다른 부부나 비혼여성에게 제공될 수 있고, 연구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배아 보관이 종료된다는 내용을 고지
- ⑥ 부부 또는 비혼여성에게 다음 내용에 관한 지침 문서를 제공(최인선, 유수정, 2023: 125).
 - 보조생식술을 통한 출산과 관련된 입법 규제를 안내
 - 보조생식술에 대한 설명을 제공
 - 입양과 관련된 입법 규제와 입양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공할 협회 및 기관의 주소를 안내
 - 부부 또는 미혼여성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 제3자 생식세포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접근과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음.

다학제 의료팀의 구성은 난자 채취의 임상 활동을 위한 한 명 이상의 의사(산부인과, 내과, 내분비학 등), 정자 수집을 위한 비뇨기과 또는 산부인과 자격을 갖춘 의사, 부부 또는 비혼여성의 개별 면담을 실행하기 위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교육을 받거나 경험이 있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또는 간호가가 최소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함께 할 수 있다(최인선, 유수정, 2023: 125).

개별 인터뷰 절차를 완료한 후 1개월의 숙려 기간이 종료되면 서면으로 부부 또는 비혼여성의 최종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루링원, 지성우, 김지희, 2024: 112).

다학제 의료팀은 인터뷰 과정에서 보조생식술을 이용할 비혼여성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날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숙려

기간을 요구하거나 보조생식술을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루링원, 지성우, 김지희, 2024: 112).

3) 덴마크

덴마크의 보조생식법(Act on Assisted Reproduction)은 보조생식술을 시술하는 의료기관에서 일차적으로 보조생식술 수증자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조생식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거부한다(최인선, 유수정, 2023: 126).

덴마크 보건부(Danish Health Ministry)가 시행한 장관 명령 316/2019 (According to Ministerial Order 315/2019)에 따라 보조생식술 수증자의 자격요건을 4개 조건을 통해 검토한다(최인선, 유수정, 2023: 126).

- ① 보조생식술 수증자의 중독 문제가 있는 경우
- ②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 ③ 사회복지사에 의해 (현재 있는) 아동을 강제로 분리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지 여부
- ④ 과거 가정폭력으로 인한 분리 경험이 있는지 여부

그러나 보조생식술 수증자의 성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민족적 배경에 의해 평가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최인선, 유수정, 2023: 126).

이러한 자격요건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부처에서 보조생식술 수증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보조생식술 수증자에게 획득하고, 수집한 정보에 근거하여 보조생식술 수증자로 부적하다고 평가된 사람에게는 보조생식술 시술이 거부되며, 거부된 사람은 최종 결정 후 4주 이내에 덴마크 항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최인선, 유수정, 2023: 126).

6. 소결

임신 목적의 생식세포 기증수증은 기증자와 수증자의 관계는 물론 이 결과로 태어나는 아동의 권리 보호 문제와 복잡하게 연관되어 이에 대한 법과 제도가 시급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김은애, 2009: 133).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은 비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현재와 같이 혼인 여성에게 보조생식술 시술을 한정하는 것은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사례를 보면 이들 국가는 조건에 부합한 비혼여성에게 보조생식술을 허용하고 있는데, 아동 복지의 측면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태어날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비혼여성의 양육 능력을 평가하고, 프랑스와 독일과 같이 아이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정보보관기관을 설치하고, 정자기증자의 정보를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아동이 성인이 될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사례가 있다(루링원, 지성우, 김지희, 2024: 124).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은 모자보건법에서 난임 규정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혼인 관계 이외의 비혼여성에게도 보조생식술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이 혼인한 여성에게만 보조생식술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근거로 「모자보건법」에서 난임을 혼인한 관계(사실혼 포함)에 한정된 규정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은 보조생식술 시술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법이 아닌 보조생식술 시술의 비용 등 지원을 위한 법률로 판단한다면 보조생식술 시술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법은 「모자보건법」이 아니라 「생명윤리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해외 사례에서도 보조생식술 시술의 근거는 「생명윤리법」 및 그에 해당하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 시술과 관련해서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지는 않았다.

해외 사례에서는 「생명윤리법」에서 보조생식술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의료진 또는 다학제 팀이 신청자의 건강, 중독 여부,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조생식술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가 단지 신청자의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비해 해외 사례는 훨씬 구체적으로 보조생식술 시술 여부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조생식술 시술을 혼인 여성에 한정하려는 시각은 그 근거 중 하나로 태어날 아동의 복리를 위한다는 것이지만, 태어날 아동의 복리를 보장하는 것은 단지 신청자의 혼인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신청자의 구체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해외 사례의 제도가 오히려 태어날 아동의 복리를 더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해외 사례의 「생명윤리법」에서는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아동의 친자관계, 생식세포 기증자 관리 및 아동의 혈통을 알 권리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 사례에서 이러한 법적 쟁점을 보조생식술의 허용 범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생명윤리법」 등 보조생식술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입법화 방향에서 이러한 법적 쟁점들에 대한 내용이 입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조생식술 시술이 거부된 경우 항소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스웨덴, 덴마크 사례에서는 보조생식술 시술이 거부된 신청자는 관할 기관에 항소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조생식술 시술을 위한 배아 생성을 위해서는 배아 생성의 윤리성을 심의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데(생명윤리법 제10조), 보조생식술 시술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이후 의료인 또는 기관생명위원회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나인선, 2024: 28).

VI

등록동반자 제도 도입 관련 쟁점

- 01 등록동반자 관계의 유형
- 02 등록동반자 관계의 성립
- 03 당사자 사이의 관계
- 04 자녀와의 관계
- 05 등록동반자 관계의 해소
- 06 소결

VI. 등록동반자 제도 도입 관련 쟁점

1. 등록동반자 관계의 유형

혼인 가구 이외에 비혼 동거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비혼 동거’, ‘비혼 동반자’, ‘생활 동반자’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비혼 동거 관계를 법적으로 등록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등록동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일부 유럽 국가들은 혼인제도 이외에 동성결혼에 대한 대안으로서 등록동반자 관계를 도입하였다(김상용, 안문희, 2022: 8). 이성 간의 관계에서는 혼인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동반자 관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으므로 초기의 등록동반자 관계는 동성 간의 관계에서만 적용되었다(김상용, 안문희, 2022: 8). 이러한 형태의 등록동거 관계는 동성결혼에 대한 대안으로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혼인과 유사한 형태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이후 동성결혼이 도입되면서 폐지되었는데, 이러한 형태의 등록동반자 관계를 도입한 국가로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이 있다(김상용, 안문희, 2022:8).

이에 비해 1990년 이후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은 동성결혼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혼인제도 자체에 대한 대안으로서 등록동반자 관계를 도입하였다(김상용, 안문희, 2022:8). 이러한 형태의 등록동반자 관계는 동성 간 관계 뿐 아니라 이성 간 관계에도 적용되었는데, 혼인제도와 유사한 무거운 관계를 규정하였는가(네덜란드) 또는 혼인보다 가벼운 관계를 규정하였는가에(프랑스, 벨기에) 따라 무거운 관계와 가벼운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김상용, 안문희, 2022:8).

또한 영국의 사례와 같이 2004년 동성 커플에 대해 생활동반자관계법(Civil Partnership Act 2004)을 도입하였으나, 2019년 생활동반자관계, 혼인 및 사망 등록법(the Civil Partnerships, Marriages and Deaths (Registration Etc) Act 2019)을 통해 이성 커플에게도 생활동반자관계를 확대한 경우도 있다(백승흠, 김수래, 2023: 374).

21대 이후에 국회에서 발의된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 등은 혼인제도에 대한 대안으로서 도입된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등록동반자 관계의 성립

프랑스의 PACS를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신분등록공무원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시에 자신들이 작성한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김상용, 안문희, 2022: 22).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성년이어야 하고, 직계혈족 및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아니어야 하며, 이미 혼인한 상태에 있거나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PACS가 성립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프랑스 민법 제515-1 및 2조)(김상용, 안문희, 2022: 22).

이렇게 신고 및 등록된 PACS는 프랑스 민법 제515-3-1조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의 출생증명서에 공시되는데, 당사자의 출생증명서에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함께 PACS 당사자임이 기록된다(박준혁, 2022: 127).

벨기에 법정동거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안문희, 2023: 135).

- ① 신고 일자(벨기에 민법 제1476조 제1단 제1호)
- ② 법정동거인 2인의 성명, 출생일, 출생장소, 서명(벨기에 민법 제1476조 제1단 제2호)
- ③ 법정동거인의 주소(벨기에 민법 제1476조 제1단 제3호)
- ④ 법정동거의 의사(벨기에 민법 제1476조 제1단 제4호)
- ⑤ 벨기에 민법 제1465조 내지 제1479조가 규정하는 법정동거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벨기에 민법 제1476조 제1단)

벨기에의 법정동거는 프랑스의 PACS와 달리 혈족이나 인척 간에도 성립이 가능한데, 혼인과 완전히 다른 제도로 보기 때문이다(김상용, 안문희, 2022: 28).

3.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프랑스 PACS 당사자 사이에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발생한다(프랑스 민법 제515조-4조, 제515조-3-1조)(김상용, 안문희, 2022: 21). PACS의 성립에 의해 인척관계는 발생하지 않고, PACS 당사자는 공통의 성(姓)을 사용할 수 없다(김상용, 안문희, 2022: 22).

PACS는 상대 당사자의 혈족과 인척관계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상대 당사자의 부모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박준혁, 2022: 131).

PACS 당사자는 신고 시에 제출하는 약정서를 통해 생활비용의 액수와 분담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데, PACS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재산관계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재산제로서 별산제가 적용되므로, PACS 성립 전에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물론, PACS의 존속 기간 중에 소득 또는 상속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각 당사자의 소유가 된다(프랑스 민법 제515-5조제1항)(김상용, 안문희, 2022: 28).

PACS의 각 당사자는 일방이 일상생활의 수요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 및 공동의 주거에 대하여 지출한 내용에 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프랑스 민법 제515-4조 제2항)(조은희, 2022: 169).

PACS의 각 당사자는 혼인한 부부와 동일한 부양과 상호 간 협조의무를 인정하는데, 부양의무의 내용은 약정에 의해서 정해진다(프랑스 민법 제515-4조)(조은희, 2022: 168).

PACS의 각 당사자는 반드시 같은 주거지에서 같이 사는 동거(cohabitation)의 의무가 발생한다(박준혁, 2022: 129).

벨기에 법정동거는 동거인 쌍방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생활비용을 분담해야 하며, 법정동거인 일방이 공동생활과 자녀양육(법정동거인 쌍방이 양육하는 자녀로서 공동의 자녀 뿐 아니라 상대방의 자녀를 포함)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다른 일방은 연대책임을 진다(김상용, 안문희, 2022: 29).

벨기에 법정동거는 당사자 간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해당하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 등은 발생하지 않고, 생존 동거인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김상용, 안문희, 2022: 29).

네덜란드 등록파트너십은 프랑스, 벨기에와 달리 혼인에 준하는 지위가 인정된다(김상용, 안문희, 2022: 31). 네덜란드의 등록파트너십이 성립하면 상대방의 혈족과 인척관계가 성립하고, 혼인 부부 간의 권리 및 의무도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부부재산공유제, 부양의무, 배우자 상속권도 인정된다(김상용, 안문희, 2022: 31).

벨기에의 법정동거에서는 부양의무 및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며, 프랑스의 PACS에서는 부양의무는 인정되지만,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반면에 네덜란드의 등록동반자관계에서는 부양의무가 인정될 뿐 아니라 부부재산공유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생존 등록동반자에게 상속권도 인정된다(김상용, 안문희, 2022: 42).

네덜란드의 등록파트너십은 우리나라의 사실혼과 비교해서도 혼인과 유사한 제도를 하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김상용, 안문희, 2022: 42).

4. 자녀와의 관계

프랑스 PACS 존속 기간 중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는데, PACS는 혼인이 아니므로 혼인 중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친생추정에 관한 규정(프랑스 민법 제312조)이 PACS에는 준용되지 않기 때문이다(김상용, 안문희, 2022: 24). 이에 따라 PACS 당사자는 인지에 의해 자녀와 친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김상용, 안문희, 2022: 4).

벨기에 법정동거에서도 동거인 간 자녀가 출생한 경우 친생추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친자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지가 요구된다(김상용, 안문희, 2022: 29).

벨기에 법정동거에서는 법정동거인 일방의 사망을 통한 증여, 유언 또는 재산계약을 통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범위 내에서 사망한 일방의 자녀에 대한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의무(벨기에 민법 제203조 제1단)를 생존 법정동거인은 부담하는데(벨기에 민법 제1477조 제5항), 이때 사망한 일방의 자녀는 생존 법정동거인의 자녀가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안문희, 2023: 137).

네덜란드 등록파트너십에서는 등록동반자 일방과 상대방의 자녀 사이에는 인척

관계가 발생하는데(네덜란드 민법 제1장 제3조 제2항), 등록파트너 쌍방은 그들의 가족에 속한 미성년 자녀(공동의 자녀 및 상대방 동반자의 자녀)를 보호, 양육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네덜란드 민법 제1장 제80조b, 제82조)(김상용, 안문희, 2022: 35).

모가 단독친권자인 경우 모와 모의 등록동반자는 협의하여 법원에 공동친권을 신청할 수 있고(네덜란드 민법 제1장 제252조), 등록동반자관계에 있는 여성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의 남성 동반자가 자녀의 부가 되는데(네덜란드 민법 제1장 제199조 a호), 이는 혼인 중 부인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친생추정 규정에 의해 남편이 자녀의 부가 되는 것과 동일하다(김상용, 안문희, 2022: 35).

5. 등록동반자 관계의 해소

프랑스의 PACS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거나 혼인(PACS 당사자 간 혼인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PACS는 자동으로 해소된다(프랑스 민법 제515-7조 제1항)(김상용, 안문희, 2022: 24). 사망으로 해소되는 경우 PACS 당사자에게는 법정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김상용, 안문희, 2022: 24).

PACS 당사자는 협의 또는 단독으로 PACS를 해소할 수 있는데(프랑스 민법 제515조-7조 제3항),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경우 당사자 2인은 PACS 신고지의 신분등록공무원에게 PACS의 해소에 관한 공동의 의사를 제출하고(프랑스 민법 제515-7조 제4항), PACS 당사자 일방이 PACS를 해소하려는 경우에는 해소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그 사본을 PACS 신고지의 신분등록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프랑스 민법 제515조-7조 제5항)(김상용, 안문희, 2022: 24).

PACS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존속 기간 동안 별산제의 적용을 받으므로, 해소 시에도 별산제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관계에 대한 청산으로서 재산분할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김상용, 안문희, 2022: 25).

PACS는 일방 당사자가 사망 시 생존 당사자에게는 유족연금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인과 차이가 있다(박준혁, 2022: 138).

벨기에 법정동거의 경우도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 동거인 쌍방의 협의 또는

동거인 일방의 의사 표시로 해소될 수 있다(김상용, 안문희, 2022: 30). 동거인 간 협의 또는 일방의 의사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분등록공무원에게 해소의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김상용, 안문희, 2022: 30).

벨기에 법정동거의 해소 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법정동거 해소 신고 양식은 주로 주민센터에서 제동하고 있다(안문희, 2023: 138)

- ① 신고 일자(벨기에 민법 제1476조 제2단 제3항 제1호)
- ② 법정동거인 2인의 성명, 출생일, 출생장소, 서명 (벨기에 민법 제1476조 제2단 제3항 제2호)
- ③ 법정동거인의 거소(벨기에 민법 제1476조 제2단 제3항 제3호)
- ④ 법정동거 해소의 의사(벨기에 민법 제1476조 제2단 제3항 제4호)

벨기에 법정동거 역시 별산제 적용이 원칙이므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분할청구권 및 부양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김상용, 안문희, 2022: 30).

네덜란드 등록파트너십은 혼인과 유사하기 때문에 해소 시 절차도 이혼과 유사하지만 이혼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 반면에 등록파트너십의 해소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다고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혼과 차이가 있다(김상용, 안문희, 2022: 36).

그러나 네덜란드 등록파트너십에서 등록파트너 쌍방이 공동으로 양육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며, 법원의 재판을 통해 자녀에 관한 법률관계, 양육자 및 친권자의 지정, 양육비의 부담, 면접교섭권 등이 결정되게 된다(김상용, 안문희, 2022: 43).

네덜란드 등록파트너십은 해소 후 부양이 필요한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을 청구할 수 있고(네덜란드 민법 제80조e, 제157조), 상대방이 등록파트너 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 및 연금에 대해서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네덜란드 민법 제1장 제80조b, 제100조 제1항, 네덜란드 연금청산법 제2조)(김상용, 안문희, 2022: 37).

6. 소결

2020년 여성가족부가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가족 다양성 국민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9.7%가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주거·생계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 여길 수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0.5%,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것도 수용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48.3%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우리 사회의 인식은 변화하고 있으며, 혼인 외의 가족 구성 제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안문희, 2023: 122).

우리나라의 사실혼 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으므로 사실혼 관계의 존재가 공적 증명서에 의해서 증명될 수 없는 반면, 해외의 생활동반자관계는 신분등록부 등에 기록되므로 필요한 경우 공적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생활동반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김상용, 안문희, 2022: 43). 우리나라에서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소송과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해외의 생활동반자관계는 신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어서 필요 시 바로 생활동반자관계의 증명이 가능하므로, 이와 연계된 각종 사회보장급여, 세제 혜택 등 지원을 제공하는데 행정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다(김상용, 안문희, 2022: 43).

현재 인구정책의 확대에 따라 혼인 가구에는 건강지원, 자녀돌봄 시간지원, 주거지원 등이 확대되고 있는데, 비혼 가구는 이러한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이용에 제약이 있는 상태이다. 비혼 가구가 이러한 지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는 가족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등록동거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비혼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는 기존의 한부모 가구 지원을 확대는 것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혼인 관계가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가족 제도를 수용함으로써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가족과 아동이 차별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등록동거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살펴본 해외 사례는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네덜란드의 등록파트너십은 혼인과 가장 유사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혼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혼인과 유사한 제도를 별도로 도입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비혼 가구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혼인 제도를 이용하기 원하지 않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혼인과 유사한 제도를 별도로 도입하는 것은 실제 제도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덜란드 등록파트너십의 이용률은 프랑스의 PACS, 벨기에의 등록 동거 제도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상용, 안문희, 2022: 39).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등록동거제도를 도입한다면 프랑스의 PACS 및 벨기에의 법정 동거와 같이 혼인과는 구별되고 그 요건이 완화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2025.9.3.)이 발의되었다. 이 법률안에서는 생활동반자의 동거 및 부양의무를 규정하였고(제16조), 생활동반자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인정하였다(제17조).

이 법률안은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제28조), 프랑스의 PACS 및 벨기에의 법정 동거에서 재산분할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과 차이를 보이고, 혼인과 유사한 재산분할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해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제30조) 생활동반자 해소에 관한 일방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 사유 중 하나로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일방이 해소를 원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제24조 제2호). 생활동반자관계 해소를 일방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지만 과실이 있는 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실제 일방의 의사에 의한 해소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프랑스의 PACS에서는 일방의 해소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폭력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는 PACS의 일방적 해소 가능성은 혼인과 구별되는 PACS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김상용, 안문희, 2022: 25). 이는 PACS의 해소 그 자체로는 과실로 인정하지 않지만, 일방의 폭력

적이거나 부당한 대우 또는 남용의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프랑스 민법 제515-7-10)(조은희, 2022: 170). 이에 따라 혼인과 구분되는 생활동반자관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일방의 해소 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 법률안에서는 생활동반자관계와 자녀의 양육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생활동반자관계에서 함께 양육하여야 할 자(子)가 있는 경우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협의에 의해 정한다’고 규정하고(제27조 제1항), 이러한 협의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제27조 제2항). 또한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수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여(제27조 제4항),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개입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네덜란드 등록파트너십에서는 등록동반자관계의 해소 시 이혼과 달리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경우 법원의 재판을 거치도록 한 것과 비교될 수 있다. 함께 양육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시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법률안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될 경우 함께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개입하여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VII

결론 및 제언

- 01 가족구성원의 다양화 보장
- 02 출산·육아지원 사각지대 보완
- 03 등록동반자관계 규정 법체계 구성
- 04 보조생식술 허용범위 확대 및
관련 쟁점 입법화

VII. 결론 및 제언

1. 가족구성의 다양화 보장

기존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제2차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이론에서 제시되었듯이 결혼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가치관, 비혼동거 및 비혼출산의 수용은 국제적 추세이며, 이러한 추세는 우리 사회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혼인 중심의 인구위기 대응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현대 사회는 자유시민들로 구성된 사회라는 점에서 인구위기 대응 정책 역시 가족 구성을 위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가족 구성의 다양화 수용이 법제도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가족 구성의 다양화는 인권(human rights) 증진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인권에 기반한 정책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지속가능하다고 판단된다.

OECD 주요국가들은 가족 구성의 다양화를 인정하고, 혼인 중심이 아닌 아이 중심의 정책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

국내 법제도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가족의 존중이 아직 법제도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책 수행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행 법령 하에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책 지원에서 사업별 기준을 마련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2. 출산·육아지원 사각지대 보완

앞에서 「아동수당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법령에서는 비혼 가구가 혼인 가구

와 차등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신청 및 지급에 있어서는 불리한 지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현재 행정체계가 혼인 가구를 중심으로 기준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법체계에서는 비혼 가구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여 혼인 가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양한 행정적 배제 및 불편이 발생하게 된다(정서린, 배문조, 2025: 174). 등록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이유는 비혼 가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원 체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 출생신고의무자 조항 및 친생자출생신고조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출생신고는 교육·복지·의료 등 출산 및 육아 지원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기 때문에 비혼 가구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가족관계등록법상 해당 조항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비혼 가구의 출산·육아지원과 관련하여 기존 법령의 개정 뿐 아니라 지자체 조례 제정을 검토할 수 있다.

지자체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헌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추38판결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그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사무는 그 제정에 있어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해당 판례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

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대법원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제정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비혼 가구에 대한 출산·육아지원 역시 지방자치법 제13제2항제2호라목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은 기존 법령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혼 가구에 대한 출산·육아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등록동반자관계 규정 법체계 구성

그럼에도 현재와 같이 등록동반자관계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비혼 가구에 대한 출산 및 육아 지원은 현행 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건강지원, 자녀돌봄 시간지원, 주거지원 등 혼인 가구에게 이루어지는 출산 및 육아 지원이 비혼 가구에도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등록동반자관계에 대한 법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제도에서는 등록동반자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사실혼 관계로 다룰 수 밖에 없는데, 사실혼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관계이므로 공적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등록동반자관계에 법제도 도입을 통해 비혼 가구에 대한 공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등록동반자관계에 대한 해외 사례에서 혼인 제도의 대안으로 도입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 중 네덜란드의 등록파트너십은 다른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혼인과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혼이 인정되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과 유사한 제도를 별도로 도입하는 것은 실익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비혼 가구는 혼인을 원하지 않거나 혼인을 하기 어려운 가구이기 때문에 혼인과 유사한 제도를 별도로 도입하는 것은 이용률이 낮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혼인과 구별되는 등록동거를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의 PACS와 벨기에의 법정 동거를 참조하여 등록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동반자관계의 일상가사대리권, 부양의무 등은 인정되지만, 성립, 해소, 재산분할, 상속 등에서는 혼인과 다르게 구성하는 것이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판단된다.

4. 보조생식술 허용범위 확대 및 관련 쟁점 입법화

「생명윤리법」 및 「모자보건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생식술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의해 비혼여성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비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현재와 같이 혼인 여성에게 보조생식술 시술을 한정하는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들이 발의되었는데 이 법률안들은 모자보건법에서 난임 규정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혼인 관계 이외의 비혼여성에게도 보조생식술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자보건법」 개정 법률안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이 혼인한 여성에게만 보조생식술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근거로 「모자보건법」에서 난임을 혼인한 관계(사실혼 포함)에 한정된 규정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은 보조생식술 시술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법이 아닌 보조생식술 시술의 비용 등 지원을 위한 법률로 판단한다면 보조생식술 시술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법은 「모자보건법」이 아니라 「생명윤리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해외 사례에서도 보조생식술 시술의 근거는 「생명윤리법」 및 그에 해당하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 시술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지는 않았다.

해외 사례에서는 「생명윤리법」에서 보조생식술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의료진 또는 다학제 팀이 신청자의 건강, 중독 여부,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조생식술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가 단지 신청자의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비해 해외 사례는 훨씬 구체적으로 보조생식술 시술 여부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조생식술 시술을 혼인 여성에 한정하려는 시각은 그 근거 중 하나로 태어날 아동의 복리를 위한다는 것이지만, 태어날 아동의 복리를 보장하는 것은 단지 신청자의 혼인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신청자의 구체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해외 사례의 제도가 오히려 태어날 아동의 복리를 더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해외 사례의 「생명윤리법」에서는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아동의 친자관계, 생식세포 기증자 관리 및 아동의 혈통을 알 권리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 사례에서 이러한 법적 쟁점을 보조생식술의 허용 범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생명윤리법」 등 보조생식술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입법화 방향에서 이러한 법적 쟁점들에 대한 내용이 입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민정의원 대표발의(2023.8.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650).
- 고용노동부(2025).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
- 교육부(2025). 2025년 보육사업안내.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2.9.30.). 비혼여성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윤리지침 개정 권고, 대한산부인과학회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2022).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사건 20진정0915500·21진정0190000(병합) 비혼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 제한 차별.
-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총조사: 가구주의 성·연령 및 세대구성별 가구(일반가구) 중 비친족가구. <https://kosis.kr/index/index.do>. (인출일: 2025. 6.24.)
- 김상용, 안문희(2022). 등록동반자관계는 혼인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중앙법학, 24(3), 7-51.
- 김영란, 주재선, 정가원, 배호중, 선보영, 최진희, 김수진, 이진숙(2021). 비혼동거 실태 분석 연구-2020년 가족실태조사 부가 연구-.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애(2009). 여성의 재생산권리와 생명의료과학기술의 관계에 대한 소고-보조생식술의 이용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12(1), 121-150.
- 김은애(2020). 비배우자간 보조생식술에서 친생자관계와 동의의 문제: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한 출생자와 부(父)의 친생자관계 관련 대법원 2019년 10월 23일 선고 2016 10월 23일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생명윤리정책연구, 13(2), 89-117.
- 김진희(2024). 헌법적 관점에서의 비혼출산: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 나인선(2024). 모자보건법 개정안 분석 및 향후 과제.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 네덜란드 등록 파트너십(민법 Titel 5A. Het geregistreerd partnerschap)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sambolag-2003376_sfs-2003-376/

(인출일: 2025.6.20.)

루링원, 지성우, 김지희(2024). 중국 비혼여성 보조생식술 이용에 대한 법제 연구. 미국헌법연구, 35(3), 91-131.

박준혁(2022). 프랑스의 PACS에 관한 연구 - 2006, 2016년 개정을 반영하여 -. 법학논집, 34(3), 115-147.

배호중, 정가원, 김정수, 권도연, 강경주(2024).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백승흠, 김수래(2023). 유럽인권법원의 판결과 영국의 생활동반자관계법의 전개. 사회법연구, 51, 349-38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벨기에 법적 동거(Cohabitation légale) 벨기에 민법 제1475조~1479조 www.ejustice.just.fgov.be/eli/loi/1804/03/21/1804032153/justel#LNK0090 (인출일: 2025.6.20.)

변수정, 김혜영, 백승흠, 오정아, 기재량(2016).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엄다원, 안문희(2023).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3.2.6.). 출생미신고 자녀, 아동수당 지급절차 개선 및 복지연계 추진 - 2023년 아동수당 지급 관련 주요 제도개선 추진 -.

보건복지부(2025a).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25b).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25c). 2025 아동수당 사업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2025. 10.). 2026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추진 계획.

송효진(2019). 비혼모에 대한 법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젠더법학, 10(2), 63-92.

송효진(2021). 가족다양성 보장을 위한 법제 대응에 있어 쟁점 고찰: 다양한 파트너십과 공동체 관계의 제도화 이슈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3(3), 185-214.

스웨덴 동거법 Samborag (2003: 375) <https://www.riksdagen.se/sv/doku->

- ment-och-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sambolag-2003376_sfs-2003-376/ (인출일: 2025.6.19.)
- 스웨덴 유전적 통합성 등에 관한 법률(Lag (2006:351) om genetisk integritet m. m.)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lag-2006351-om-genetisk-integritet-m-m_sfs-2006-351/ (인출일: 2025.6.24.)
- 스웨덴 육아휴직법(Föräldraledighetslag (1995:584))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foraldraledighetslag-1995584_sfs-1995-584/ (인출일: 2025.6.25.)
- 안문희(2023). 벨기에 법정동거제도에 관한 연구. 법조, 72(4), 120-144.
- 여성가족부(2025).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영국 공동 육아휴직 규정(The Shared Parental Leave Regulations 2014). <https://www.legislation.gov.uk/ukdsi/2014/9780111118856/contents> (인출일: 2025.6.25.)
- 영국 인간 수정 및 배아생성에 관한 법률(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2008)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8/22/contents> (인출일: 2025.6.24.)
- 용혜인의원 대표발의(2023.4.26.)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647).
- 용혜인의원 대표발의(2025.9.3.)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2634).
- 육아정책연구소(2025). 2024 영유아 주요 통계.
- 윤석찬(2023). 비혼여성 보조생식술의 국내법상 허용에 관한 고찰. 재산법연구, 39(4), 291-311.
- 이동수(2017). 보조생식 의료방법으로 출생한 자의 친자법상의 문제에 대한 고찰 - 독일의 정자공여자등록법의 제정을 중심으로 -. 가족법연구, 31(3), 219-270.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2023.6.2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956).
- 이수형, 김은애, 이기평, 오윤지, 박민정, 한상희, 김경덕(2023). 난임시술 현황과 대응과제 - 생식세포 기증 시술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강, 정혜경,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2024.10.1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4693).

- 이준일(2022). 비혼여성의 인공임신에 관한 자기결정의 권리: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포함된 사회권 및 평등권과 함께. 인권연구, 5(1), 1-42.
- 이지은(2023). 보조생식술의 허용범위와 친자관계 - 프랑스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중심으로 -. 비교법학, 30(3), 173-197.
- 임희진, 황여정(2023).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혜영의원 대표발의(2023.5.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394).
- 장혜영의원 대표발의(2023.5.31.).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404).
- 정서린, 배문조(2025). 경상북도 비혼 가정 정책 지원 연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정세정, 정고혜진, 김기태, 김동진, 김성아, 오욱찬, 이아영, 이해정, 임덕영, 신영규, 하은솔, 한겨레, 김근혜(2025).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은희(2022).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소고 - 생활동반자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내용을 중심으로 -. 법과 정책, 26(3), 151-190.
- 조은희(2023). 보조생식술에 의해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와 친족관계 - 독일의 보조생식술에 의한 친자관계의 법률문제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일감법학, 56, 487-521.
- 최인선, 유수정(2023). 국내 비혼단독출산의 법·제도적 고찰: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날 출생아의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생명·윤리와 정책, 7(1), 115-137.
- 통계청(2021).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가구 기본 항목.
- 통계청(2023).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 통계청(2025a). 2024년 출생 통계.
- 통계청(2025b).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혼인·출생 변화.
- 통계청(2025c). 행정자료로 살펴본 2023년 「청년(20~39세) 한부모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 프랑스 노동법(Code du travail)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section_lc/LEGITEXT000006072050/LEGISCTA000006177854/#LEGISCTA000006177854 (인출일: 2025.6.27.)
- 프랑스 생명윤리법(LOI n° 2021-1017 du 2 août 2021 relative à la bioéthique)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3884>

384 (인출일: 2025.6.24.)

프랑스 시민연대계약(PACS)(민법 제515의1~제515의8조)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id/LEGISCTA000006136536/>(인출일: 2025.6.19.)

홍윤선(2025). 보조생식을 이용할 권리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S.H. and Others v. Austria 판결. 가족법연구, 39(2), 323-362.

Ethics Committee of the 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2021). Access to fertility treatment irrespective of marital status,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an Ethics Committee opinion.

Lesthaeghe, R. (2014).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A concise overview of its development. *PNAS*, 111(51).

OECD family database.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oecd-family-database.html>. (인출일: 2025.6.24.)

비혼 가구 출산·육아지원 개선 방안 연구